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2021년
혁신법을 반영한 알기쉬운

연구비 사용관리 매뉴얼

202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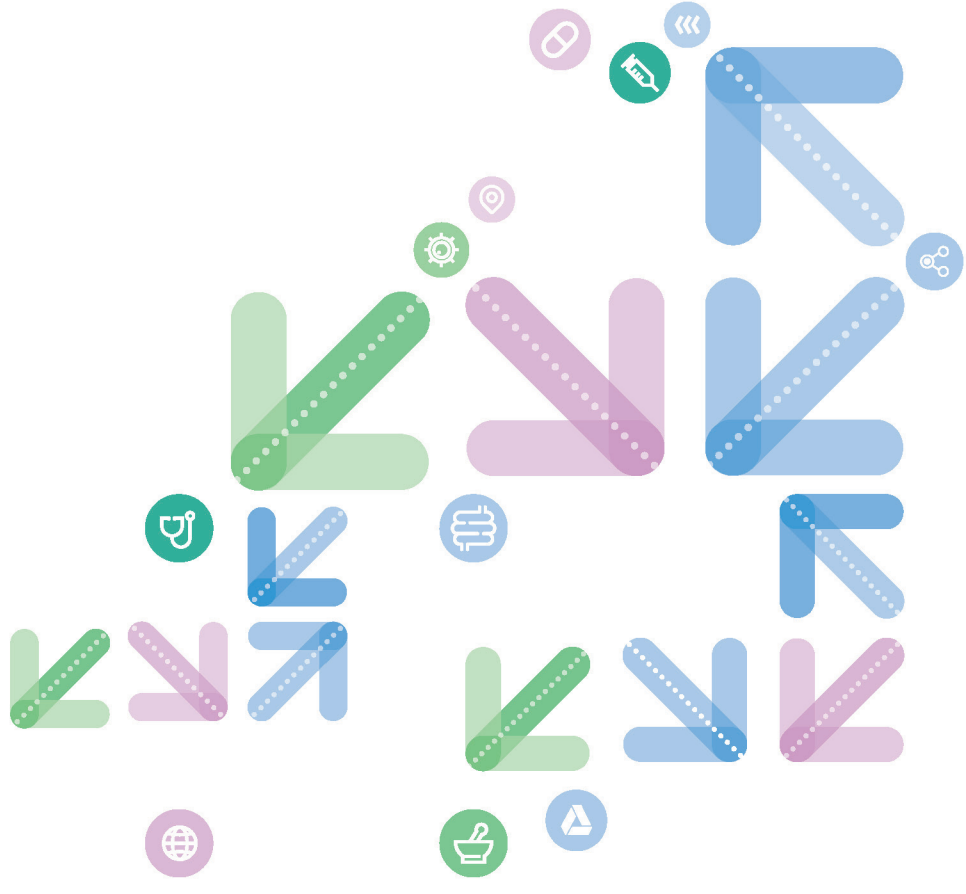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차 례

1. 202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 1

2. 협약안내문 ····· 41

3. 연구책임자 교육 활성화 ····· 53

4.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59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R&D사업 지원방안 ····· 63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현황 ····· 75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목록 ····· 79

8. 종합FAQ ····· 83

9. 연구협약·연구비 정산 관리 매뉴얼 ····· 101

1. 202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1 2021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Ⅰ. 2021년도 사업현황

1 2021년도 보건의료R&D사업 현황

추진 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7조(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지정)

추진 경위

1995년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 설립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128억원) 시행
	보긴의료기술진흥법 제정(법률 제5017호)	
1998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24억원) 시행	
2008년	임상연구인프라조성 사업(350억원) 시행	
2010년	임상의과학자양성사업(12.5억원), 글로벌화장품 신소재 연구개발사업(60억원) 시행	
2011년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50억원)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50억원) 시행	
	의료기기기술개발사업(40억원) 시행	
2012년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10억원), 사회서비스(10억원) 시행	
2013년	질환극복연구개발사업(890억원),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798억원), 보건의료서비스(20억원) 시행	
2014년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정신건강기술개발 등 4개 사업(275.6억원) 시행	
2015년	감염병위기대응 기술개발사업(70억원, 추경) 확대, 첨단바이오의약품글로벌진출사업(75억원) 시행	
2017년	국가전략프로젝트(정밀의료기술개발)(32억원), 심혈관계질환첨단의료기술가상훈련시스템개발(7억원) 시행	
2018년	연구자주도질병극복연구, 공익적 질병극복연구,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등 6개 사업(322억원) 시행	
2019년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 스마트임상시험플랫폼기반구축, 바이오메디컬글로벌인재양성 등 10개 사업(389억원) 시행	
2020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감염병 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등 11개 사업(969억원) 시행	

3

2 2021년도 R&D사업 현황

2021년도 R&D 세부사업별 예산 * 총 49개 사업(기획평가관리비 포함)

No.	세부사업명	'20년도 예산 (A)	'20년도 추경 포함	'21년도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1	감염병방역기술개발	-	8,500	13,933	13,933	순증
2	감염병의료기술근거생성연구	-	750	1,500	1,500	순증
3	코로나19치료제임상지원사업	-	45,000	62,700	62,700	순증
4	코로나19백신임상지원사업	-	49,000	68,700	68,700	순증
5	코로나19치료제백신비임상지원사업	-	-	7,400	7,400	순증
6	노인천만시대대비고령친화서비스연구개발	-	-	3,995	3,995	순증
7	질병중심중개연구사업	-	-	3,663	3,663	순증
8	공익적의료기술연구사업	-	-	4,173	4,173	순증
9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	-	6,411	6,411	순증
10	국가신약개발사업	-	-	15,051	15,051	순증
11	디지털병리기반의암전문AI분석솔루션개발사업	-	-	7,170	7,170	순증
12	중환자특화빅데이터구축및AI기반CDSS개발	-	-	7,064	7,064	순증
13	감염병예방·치료기술개발사업	25,532	25,532	46,768	21,236	83.2
14	국민건강스마트관리연구개발사업	2,966	2,966	4,815	1,849	62.3
15	노인장애인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4,800	4,800	7,600	2,800	58.3
16	돌봄로봇중개연구및서비스모델개발	2,201	2,201	2,858	657	29.9

4

2 2021년도 R&D사업 현황

2021년도 R&D 세부사업별 예산 * 총 49개 사업(기획평가관리비 포함)

No.	세부사업명	'20년도 예산 (A)	'20년도 추경 포함	'21년도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17	바이오헬스투자인프라연계형R&D사업	2,236	2,236	5,635	3,399	152.0
18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30,189	30,189	60,200	30,011	99.4
19	바이오빅데이터구축시범사업	4,267	4,267	7,250	2,983	69.9
20	의료기술상용화지원센터	6,450	9,450	16,995	10,545	163.5
21	의료데이터보호 · 활용기술개발	7,970	7,970	9,914	1,944	24.4
22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2,950	2,950	7,877	4,927	167.0
23	치의학의료기술연구개발	2,008	2,008	3,157	1,149	57.2
24	한의기반융합기술개발	5,439	5,439	6,630	1,191	21.9
25	한의약혁신기술개발	7,779	7,779	10,177	2,398	30.8
26	환자중심의료기술최적화연구사업	19,105	19,105	22,404	3,299	17.3
27	CDM기반정밀의료데이터통합플랫폼기술개발	5,366	5,366	5,366	-	-
28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	12,156	12,156	3,306	⊿8,850	⊿72.8
29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9,072	9,072	630	⊿8,442	⊿93.1
30	마이크로의료로봇실용화기술개발사업	8,704	8,704	10,143	1,439	16.5
31	사회서비스	150	150	150	-	-
32	스마트임상시험플랫폼기반구축사업	2,780	2,780	3,707	927	33.3

5

2

2021년도 R&D사업 현황

2021년도 R&D 세부사업별 예산 * 총 49개 사업(기획평가관리비 포함)

No.	세부사업명	'20년도 예산 (A)	'20년도 추경 포함	'21년도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33	연구중심병원육성	37,170	37,170	43,996	6,826	18.4
34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	2,800	2,800	2,200	⊿600	⊿21.4
35	인공지능신약개발플랫폼구축	2,778	2,778	3,000	222	8.0
36	임상연구인프라조성	12,668	12,668	4,550	⊿8,118	⊿64.1
37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	6,244	6,244	6,244	-	-
38	첨단의료복합단지미래의료산업원스톱지원	4,453	4,453	5,887	1,434	32.2
39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	9,232	9,232	8,518	⊿714	⊿7.7
40	피부과학응용소재선도기술개발	7,740	7,740	10,320	2,580	33.3
41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11,261	11,261	10,702	⊿559	⊿5.0
42	첨단의료기술개발	50,588	50,588	57,308	6,720	13.3
43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일반희계)	16,300	16,300	13,505	⊿2,795	⊿17.1
44	보건의료인재양성지원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	2,903	2,903	4,070	1,167	40.2
45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16,192	16,192	6,973	⊿9,219	⊿56.9
46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	3,120	3,120	780	⊿2,340	⊿75.0
47	의료기기기술개발	23,768	23,768	15,087	⊿8,681	⊿36.5
48	질환극복기술개발	2,785	2,785	685	⊿2,100	⊿75.4
49	한의약선도기술개발	7,235	7,235	5,035	⊿2,200	⊿30.4

6

2

2021년도 R&D사업 현황

2021년도 R&D 세부사업별 예산 * 총 49개 사업(기획평가관리비 포함)

No.	세부사업명	'20년도 예산 (A)	'20년도 추경 포함	'21년도 예산 (B)	증감 (B-A)	증감률(%)
50	100세사회대응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종료)	1,692	1,692	-	⊿1,692	순감
51	심혈관계질환첨단의료기술가상훈련시스템기술개발(종료)	855	855	-	⊿855	순감
52	연구자주도질병극복연구(종료)	7,584	7,584	-	⊿7,584	순감
53	공익적질병극복연구지원사업(종료)	6,960	6,960	-	⊿6,960	순감
54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종료)	13,090	13,090	-	⊿13,090	순감
55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종료)	500	500	-	⊿500	순감
	합계	410,038	516,288	636,202	226,164	55.2

7

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배경

부처별 관리규정이 산재되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심화**
- 21개 중앙행정기관이 총 286개 R&D 관리규정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등) 을 운영 중('19.10 기준)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 (KISTEP, '16)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관리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환경 조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구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5개 장, 41개 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5개 장, 67개 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 관련 사항 규정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포함한 9개 행정규칙

기관별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포함)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연구개발기관의 책무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함 • 연구개발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여 적용하여서는 안됨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적용범위 및 경과조치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 협약체결의 단위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임(따라서, 연차평가 및 연차정산 삭제)

➢ '21.1.1이후부터 신규 또는 계속과제 모두 적용(법 부칙 제1조)

☑ (사례1)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12.31)	'21년 (1.1~12.31)	'22년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혁신법 적용 (단계정산)	
정산기준					
회수기준					

☑ (사례2)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사업연도	'18년	'19년	'20년 (1.1~6.30)	'21('20.7.1~21.6.30) '20.7.1 ~'20.12.31	'21.1.1 ~6.30	'22년
사용기준	종전규정 (연차정산)			종전규정	혁신법 적용	
정산기준				혁신법 적용(단계정산)		
회수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과기정통부, '21.2.26, p51)

Ⅲ. 연구 협약 및 관리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전 주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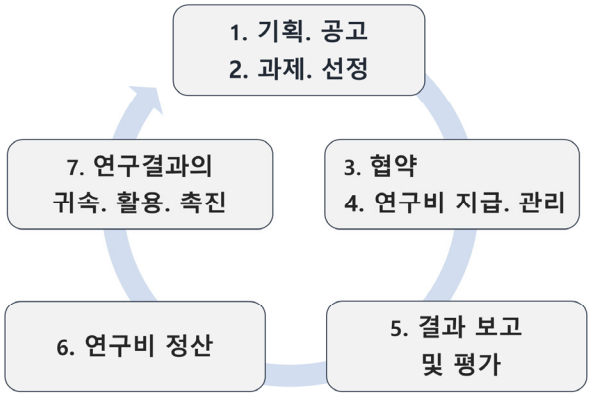

12

2 목적 및 관련근거

목적

- 보건의료 R&D 사업의 연구비 집행, 관리 및 정산업무에 대한 이해 도모
  - 연구비 집행 업무를 쉽게 수행
-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비 집행 · 관리 문화를 확립
  - 투명한 연구비 집행 유도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예규, 보건복지부) 등

13

3 협약 · 정산 프로세스

협약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구비 지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관연구기관(정부출연금 100% 지급) ['통합Ezbaro'를 통한 지급]
↓	
연구수행	◦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단계 또는 최종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사용실적 보고서 검토 (정산)	◦ 위탁정산기관 : 확인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확정
↓	
검토결과 통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	
이의신청 및 집행잔액 반납	◦ 이의신청 및 집행잔액 반납 *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	
현장점검(필요 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14

4 연구 협약 – 주요 변경사항

➲ 협약체결 :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혁신법 제정 전·후 협약 절차 변경사항

종전

- (협약기간) 연차, 다년도 협약
- (협약범위) 전문기관↔주관연구기관
- (협약절차) 협약체결 → 계획서 보완
- (연구비 지급) 분할지급(협약시 20%. 계획서 보완시 80%)
- (과제유형) 세부과제 有

혁신법

- (협약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 협약
- (협약범위) 전문기관↔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
- (협약절차) 계획서 보완 → 협약체결
- (연구비 지급) 일시지급
- (과제유형) 세부과제 無

※ 종전의 세부과제는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

기존(복지부)	혁신법	역할
주관(총괄, 단독)	주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연구책임자 신분, 성과 소유, 연구비 상한 없음, 위탁 가능)
세부	공동	과제를 주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 (참여연구원 신분, 성과 공동 소유, 연구비 상한 없음, 위탁 불가능)
위탁	위탁	주관에서 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참여연구원 신분, 성과 소유 불가, 연구비 상한 있음, 위탁 불가능)

15

5 연구 협약 – 프로세스

지원확정 통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기관
계획서 수정 · 보완	• 수정 보완 및 전산제출 기간 :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의견 반영하여 계획서 보완 • 양식 : HTDream-자료실-규정/서식-관련서식 또는 과제담당자 별도안내 • 제출방법 : HTDream-R&D지원시스템-(연구책임자) 제출-(기관담당자) 승인
협약체결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회화면 : HTDream 로그인(기관담당자)-R&D지원시스템–협약/정산-과제협약체결승인]
연구비 지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기관(정부출연금 100% 지급) ['통합Ezbaro'를 통한 지급] - 관리계좌 및 카드사는 '통합Ezbaro 참여은행 및 카드사' 중 연구기관에서 선택 - 연구자 및 연구기관 담당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서 별도 회원 가입 필요 -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는 '통합Ezbaro' '연구비 집금 및 지급관리'에서 '지급계획' 수립 및 '연구비 수령계좌 등록' 필요 * 통합Ezbaro 사용방법 등은 GAIA/통합 Ezbaro 콜센터 1833-2785 문의

16

6 중요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사전 승인사항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2.연도별 정부지원금액 또는 기관부담금액 변경(현금과 현물의 변경 포함)
	3.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
	5.연구시설 ·장비비 변경 1)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2)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3)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ZEUS를 통해 무상이전 받으려는 경우 제외) 4)연구시설 ·장비 구축목적 과제의 경우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6.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 이상 증액
	7.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8.해당 단계의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로 이월

7 경미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통보사항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공문 또는 통합정보시스템)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경미한 사항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8 연구비 지급– '통합Ezbaro'를 통한 연구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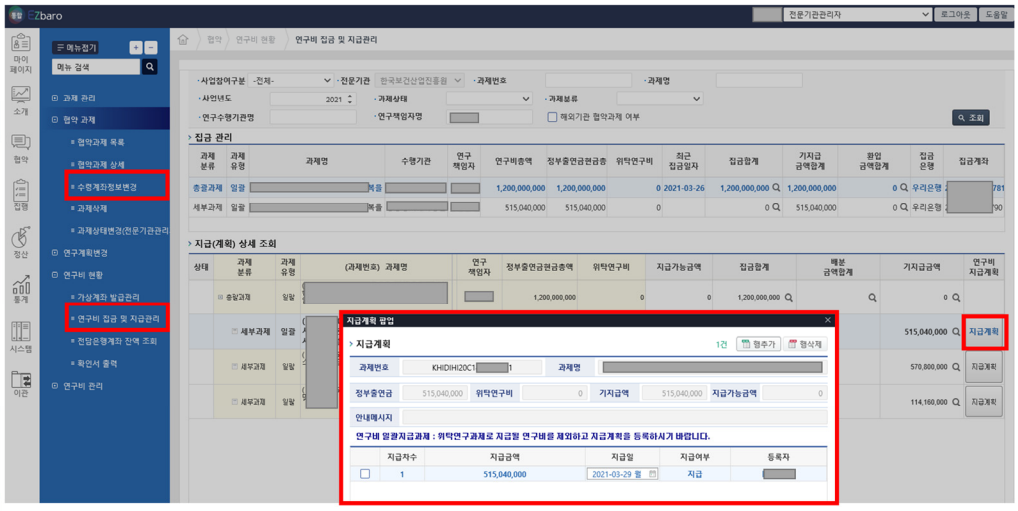

19

9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금부담금 감면 연계 제도

➲ 중견·중소기업이 신규채용 기준 외에 추가 채용시 민간부담 현금을 인건비만큼 감면

-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 희망기관은 공문 신청 후, 협약 시 안내받은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를 수정계획서에 반영

(관리규정 [별표2]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적용 기준]

과제 규모	기준채용인원	현금감면 적용 ("총 채용인원" – "기준채용인원")
5억원 미만	0명	총 1명 이상 채용시 적용 가능(채용인원 전체 적용)
5억원~10억원	1명	총 2명 이상 채용시 적용 가능(총 채용인원((예시) 3명) – 1명 = 2명)
10억원~15억원	2명	총 3명 이상 채용시 적용 가능(총 채용인원((예시) 3명) – 2명 = 1명)

* 현금부담금 한도 내에서 감면 적용 가능하며, 기준채용과 현금감면 인력 중복 불가

20

10 기술료 제도 안내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및 기준**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21

11 시스템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khidi.or.kr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 https://www.htdream.kr (과제신청/평가/협약)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www. gaia.go.kr → 통합Ezbaro (연구비 사용/정산/반납)

※ 통합Ezbaro 사용방법 등은 GAIA/통합 Ezbaro 콜센터 1833-2785 문의

22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과제신청/평가/협약) (https://www.htdream.kr)

2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연구비 사용/정산/반납)
(https://www.gaia.or.kr)
GAIA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콜센터
GAIA 소개
통합연구지원
참여와 소통
자료실
연구자 중심의
통합연구비관리의 첫걸음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시작합니다.
공지사항
공지 [KCB] 카드 본인확인서비스 카드사 시스… 2021.05.21
공지 [KCB] 카드 본인확인서비스 카드사 시스… 2021.03.28
공지 [KCB] 카드 본인확인서비스 카드사 시스… 2021.02.24
공지 혁신법 적용에 따른 통합Ezbaro 시스템… 2021.01.21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체험하기
통합 Ezbaro
통합 RCMS
통합Ezbaro 체험하기
통합RCMS 체험하기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동일한 환경을 통해 사전 체험하는 공간입니다.
체험하기는 별도 개정 정보로 로그인 되며, 체험 환경을 벗어날 경우 데이터는 초기화됩니다.
고객지원안내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시작 전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확인하기
교육수강 신청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학습에 필요한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
24

Ⅳ. 연구비 정산

1 연구비 정산관리- 주요 변경사항

➡ 연구개발비 공통기준

혁신법 주요 제정 내용

연구개발비 정산 주기 연장	- 연차정산을 폐지하고 과제 단계 또는 최종 종료 시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 간소화	- 비목별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 금액, 간접비 총액,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연구시설 · 장비비 관련 변경 등
상시점검 강화	-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EZbaro시스템에 입력한 연구비 사용내역(증빙 포함) 컨설팅 * 위탁정산기관 담당 회계사를 사전 지정하여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분 정정 및 정산 시 인정되도록 보완 · 점검 - 상시점검수수료는 위탁정산수수료와 동일하게 주관연구기관 연구비에서 매년 계상
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 활용
연구개발비 이월	- 단계로 구분된 경우 남은 연구개발비를 단계 내 다음 연차에서 사용 가능 - 다만,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26

2 연구비 정산관리- 주요 변경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주요 제정 내용

구분		제정 전(~'20년)	제정 후('21년~)
인건비	참여율 용어	참여율	인건비 계상율
	참여율 관리 단위	불명확	• 정부출연기관 : 연 단위 • 그 외 기관 : 월 단위
	참여율 입력 주기	매월 입력	• 기관의 회계연도 내 1회 입력
	참여율 130% 허용 기관	• 정부출연기관 • (일부부처) 전문생산기술연	• 정부출연기관 • 전문생산기술연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 중소기업 신규인력 • 지식서비스 분야 • 연구개발서비스업 • 기타 부처 인정 경우	• 중소기업 신규인력 • 중견기업 신규인력 • 중소, 중견 기존인력, 대기업 신규, 기존 인력 중 부처 인정 경우 • 연구성과 국유의 경우 • 기타 부처 인정 경우
	영리기관 현금지급 비율	< 신 설>	• (원칙) 연구비 현금의 50% 이내 • (부처 인정 시) 50% 초과 가능

27

2 연구비 정산관리- 주요 변경사항

➡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주요 제정 내용

구분		제정 전(~'20년)	제정 후('21년~)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운영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 학생연구자 보유기관
	학생연구자 참여율 산정재원	• 불명확	• 대학재정지원사업 인건비, 직장 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기타 단기 소득 제외
장비 도입 기한		•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원칙)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 (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과제종료일까지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집행비율 제한		< 신 설>	• 직접비의 40% 범위내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에서 인정하는 경우 초과 가능
재료 도입 기한		• 과제종료 전까지 •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과제종료 전까지
SW 사용료 기한		• 과제종료 전까지	•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 과제기간 중 사용분에만 적용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가능여부		• 불명확	• (비영리) 가능 • (영리) 불가

28

3 연구비 정산관리 – 사용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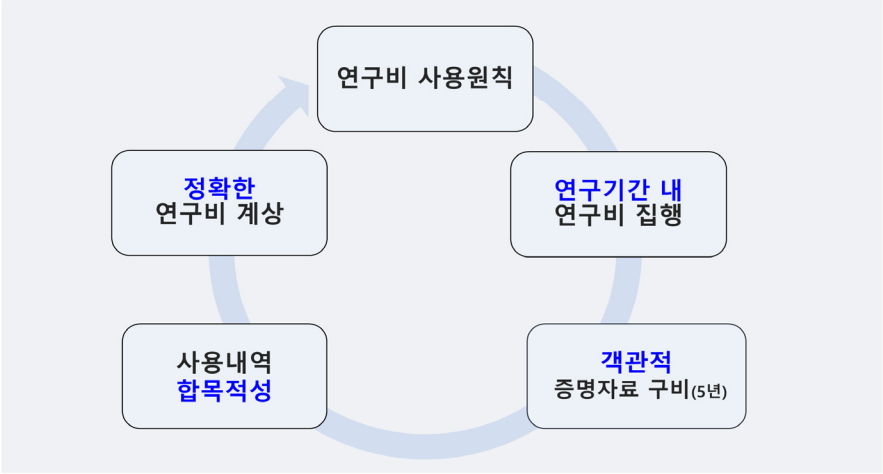

29

4 연구비 정산관리 – 프로세스

대원칙

- 연구비는 협약기간 내 사용 !!!

집행 단계

-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

→ 연구비 사용내역(증빙 포함) 상시점검 실시

구분	일괄지급 연구과제	건별지급 연구과제
연구비카드사용	연구비카드 결제대금 이체일로부터 5일 이내	연구비카드 사용일로부터 카드결제대금 이체 전까지
그 밖의 경우(계좌이체 등)	연구비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연구비 사용 이전까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없음
사용기준 제22조 제4항 (보고서, 연구수당 등)	사용실적보고일까지	해당없음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제외)	연구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해당없음

정산 단계

- 위탁정산기관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연도별 과제종료 시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로 갈음

반납 단계

- 집행잔액 반납 안내를 통보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

30

5 연구비 정산관리 – 연구시설 장비의 도입 심의 및 관리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참조**

가. 도입 심의

구분	연구기관기본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1억원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평가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기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나. 심의를 득한 시설장비의 변경 심의

-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추가변경심의(과기정통부/NFEC)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협약변경으로 처리

다. 3천만원 이상(미만이라도 공동활용 가능한) 시설장비 구축 후 30일 이내 NTIS 또는 ZEUS에 등록하여야함

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시설장비는 정산 시 불인정금액으로 회수 조치함

31

6 연구개발비의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비 공통계상기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 연구기관별 수립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기관이 종합하여 제출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항목별(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총액만 작성하고 항목별 내역은 작성 불필요(연구시설 ·장비는 내역 작성)
연구개발비 지급방식 및 지급대행	• 통합Ezbaro(한국연구재단): 비영리기관-일괄지급, 영리기관-건별지급 • 통합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모든기관-건별지급
연구개발비 공통계상기준	• 직접비: 해당 과제수행에 필요한 금액 계상 • 간접비: 여러 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금액 계상 • 그 밖의 경우 :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 가능(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 금지)
연구개발비 계상불가 비용	• 환급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비용, 기관 내부거래, 계열사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간 거래비용

연구개발비 공통인정기준

계상기준	•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입증기준	• 연구개발비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검수기준	• 자체 규정에 따라 구매 ·검수하여야 함
사용일기준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함 • 사용실적보고일까지 사용가능 1)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SW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사용형태기준	•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다만, 외국물품 수입 등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현금사용 가능)

6 연구개발비의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비 계상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연구개발기관 간 비용	원칙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불가 예외사항(계상가능) 가. 대학이 같은 대학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특정한 경우 1)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2)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 ·검사 ·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가)단독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상기 이외의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한 비용 3)비영리기관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하는 비용 다. 정부출연 연구개발기관과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영리기관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 ·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불가

6 연구개발비의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내 현물 포함여부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O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O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O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연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X
연구수당 불인정	직접비 사용비율 20%초과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X

Q&A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나요?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합목적성을 소명한다면 구매가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함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현금을 출금하여 집행하는 행위는 금지됨

7 인건비

인건비

사용용도			•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사용기준	현금 인건비	비영리 기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현금계상 가능(교수,공무원은 현금계상 불가)
		영리기관	• 중소 ·중견기업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중소 ·중견기업 기존인력,대기업,기타)
	현금인건비 한도 (영리기관)		• 현금연구개발비의 50% 한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
	인건비계상율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은 월단위100%(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연은 연단위130%) 이내 관리 • 관리단위: 월단위(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연은 연단위) • 시스템입력주기: 기관의 회계연도일까지 입력
	기관단위 관리		• 비영리기관(대학, 정부출연기관, 기타기관)은 기관 별도 계정을 거쳐 지급 가능(과제별 인건비계상률 관리 필요) • 영리기관은 인건비 기관단위 관리 불가
	연구근접지원인력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 지급 불가 • 영리기관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주요 변경 사항	정의		• 참여율 → 인건비계상률
	용어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 연구근접지원인력
	계상률관리단위		• 월급여총액(정부출연기관은 연급여총액)
	계상률입력단위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전까지 1회 입력

7 인건비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기준 제39조제1항〉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 없음)	• 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
인건비계상률 산출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
계상률 관리 단위	• 별도없음(불명확)	• 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 포함) : 1년간의 급여 총액 단위 • 그 외 기관 : 월급여 총액 단위
계상률 입력주기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 • (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	• (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 • (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이내(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

7 인건비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참여율 100%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 불가(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에 0% 입력불가(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입력됨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 자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 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	〈공통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지급최대비율 (영리기관)	〈신설〉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가능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기준 별지2호 서식) 관리 필요 〈사용기준 제65조제6항〉

7 인건비

Q&A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하며 인건비에서 집행하여야 함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 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 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8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 체결한 경우만 해당)
사용기준	계상율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율을 월 100%이내 관리
	확약서	•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
	계상기준	•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이상, 석사과정 180만원이상, 박사과정 250만원이상
	지원규정	• 학생연구자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공개(학업 및 연구보장, 처우개선, 학생인건비계상기준 등 포함)
주요 변경 사항	학생연구자지원규정 운영기관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 → 학생연구자 보유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
	인건비계상율 제외	• 총인건비계상율에서 재정지원사업등의 인건비 및 장학금,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등 인건비, 창업소득 및 기타단기근로소득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 불필요(총인건비계상률 산정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박사후연구원인건비	• 학생인건비 지급불가(인건비 지급대상)

8 학생인건비

Q&A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 등에게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전일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추가 확보 노력,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액 제한 등)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9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연구시설 ·장비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임차비, 운영 ·유지비, 연구인프라조성비
사용기준	계상	• 연구개발기관의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 ·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사전승인	• 3천만원(부가세포함)이상 연구시설 ·장비비의 변경
	도입기한	• 원칙: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전까지 • 재난 ·재해등 중대한 사유 발생: 최종(단계) 종료일 1개월전까지(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 • 연구시설 ·장비 구축과제: 최종(단계) 종료일까지(중앙행정기관 인정사항)
	영리기관 현물 계상	• 과제 시작전부터 소유 ·임차 ·사용대차 자산 구입가의 20%내에서 현물 계상 • 구입 완료일 : 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 • 내용연수 만료일 : 현물계상연도의 말일 이후
주요 변경 사항	도입기한	•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전까지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관리시스템 등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사용기준	계상	• 연구개발기관의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 및 시험설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도입기한	•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9 연구시설·장비비 및 연구재료비

Q&A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대상인 3천만원 장비는 부가세 포함인가요?	•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여야 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임 • 사업계획서에는 27백만원으로 기재 후 부가세 혹은 설치부대비용 4백만원이 발생하는 경우 3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회수대상에 해당함
비영리 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나요?	•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함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연구시설 ·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연구재료비를 과제 종료일까지 구입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에서는 재료비 구입기한을 최종(단계)종료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계 종료일까지 구입(입고)가능함

10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지식재산창출활동비, 외부전문기술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밖의비용
사용기준	지식재산창출활동비	•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
	외부전문기술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한도=직접비의 40%(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 가능, 21.1.1이전 사용분 제외)
	회의비	• 연구개발기관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는 식대 계상 불가(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은 가능) • 증빙요건: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영수증 • 단, 10만원이하의 회의비는 회의목적,일시,장소,내용,참석자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대신 가능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이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 •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출장계획서와 사후에 출장결과보고서 구비 필요
	SW활용비	• SW사용계약은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전까지 체결(긴급상황시 1개월,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종료일) •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SW사용계약기간의 경우 최소단위 입증하면 계약금액 전부 계상가능 •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SW활용비를 기관단위로 통합구매 관리 가능(비영리기관만 가능)
	연구인력 지원비	•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아닌 자의 지원비, 종신학회비, 과제무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학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 평일점심 식대,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등 계상 불가 • 과제 관련 학회의 연회비(1년)-일할 ·월할계산 하지 않음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
	전문가활용비	• 정부출연기관: 동일 부서(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 소속된 자 계상 불가 •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동일 연구실 소속된 자 계상 불가 • 영리기관: 동일 기관 소속된 자 계상 불가

10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_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유의사항

비영리기관	전문가활용비	• 최소단위부서(대학:동일 연구실, 정부출연연:동일 부서)내 전문가활용비 계상 불가
	SW활용비	• 여러 과제에서 SW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 통합구매 · 관리 가능 • 기관 단위 통합구매를 위해 과제별로 필요한 비용 분담 가능
영리기관	전문가활용비	• 동일 기관내 전문가활용비 계상 불가
	현물 기술도입비	•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현물 계상 가능 • 해당 기술 도입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실운영비*	•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비용 계상 불가,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 · 관리계획 없이 사용가능
	연구과제운영경비 정산 면제	• 직접비(현금 · 현물)의 5%이하 정산 면제 규정 삭제
	연구근접지원인력 지원대상	• 연구활동비 지급가능(단,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 설치 · 임차 ·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 비품의 구입 · 유지 비용

10 연구활동비

Q&A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 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

11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수당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사용기준	계상한도	•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계상 • 수정인건비=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 원래계획상의 연구수당금액보다 증액계상 금지 •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내에서 연구수당 계상
	미지급인건비 입력	•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기여도 평가	•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평가 등 합리적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1인당 집행한도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명에게 연구수당의 70% 초과 지급 금지
	연구수당 불인정	• 정산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한 금액 • 연구수당집행비율이 직접비사용비율을 20%P이상 초과한 금액 (연구수당지급액X(연구수당지급비율-직접비사용비율-20%)), 현물제외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사용기준	계상한도	• 한도=(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의 40%(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사용 가능)
	사전승인	• 원래계획보다 20%이상 증액하여 계상시 사전 승인 필요
	집행 및 증명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구비)
	사용실적보고 ·정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보고를 받고, 정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11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Q&A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 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임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12 간접비

간접비

사용용도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타의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비용,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활동지원금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기술창업 출연 ·출자금
사용기준	간접비비율 적용	• 연구개발과제 시작(단계)일의 해당 과제비 고시비율 적용 원칙
	통합관리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별도 계정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간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 성과평가 실시후 지급
주요 변경 사항	간접비비율적용시점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의 경우 해당단계)의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	• 고시비율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 고시비율내에서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 고시비율	• 5% → 10%
	통합관리 명시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 가능, 영리기관 통합관리 불가
	사용제한 명시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 불가

12 간접비

Q&A

논문게재료는 직접비와 간접비 중 어느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직접비 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함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단, 직접비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흡수하게될 경우 부당 집행금액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임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13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절차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방법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 내역 입력
연구비통합 관리시스템 입력	일괄지급대상과제	•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 그 밖의 경우: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대상과제	•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 그 밖의 경우: 사용하기 전
일괄지급대상 과제의 연구 개발비 입력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구수당 등	• 사용실적 보고일까지(보고서발간 및 평가관련 비용, 정산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등)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지급이전의 사용	과제 시작일	•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하루
	협약 ·지급 지연	• 연구개발기관 시작일부터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자체재원 활용 인정
증명자료		• 전체(단계)종료후 5년간 보관 • 전자문서법에 따른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보관 가능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상시점검 근거규정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실시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구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용내역 미입력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구 가능

14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정부지원 금액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금액 • 그외 기관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금액 • 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금액
정산시 제출 서류	•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현물부담확인서, 연구개발비 사용증명자료
정산방법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상 온라인정산
상시점검	• 정산실시전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에 착수하여야 하고, 회수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회수액	• 회수대상액 = 직접비 사용 잔액 + 간접비 사용 잔액(협약해약시 간접비 사용잔액, 공기업 이외 기업의 간접비 사용잔액) +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액 + 직접비 집행비율 50% 이하 과제의 간접비총액 X(간접비집행비율-직접비집행비율) • 회수액 = 회수대상액 X 정부지원금비율 + 현물부족부담액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구개발기관의 실무관련 주요 질의사항 모음

정동회계법인

15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동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연구개발기관 종류	주관연구기관인 Koo와 주관-세부간의 협약용 계약서 작성을 통해 협약진행에 있으나, 말씀해주신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세부과제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주관 혹은 공동으로의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관/협동/공동/위탁 혁신법: 총괄주관,주관/공동/위탁 (협동기관 삭제) 협동연구개발기관인 세부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 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비 이월	현재 2차년도 진행 중으로, 1차년도 연구수당 집행잔액 이월이 불가한지요?	혁신법 시행이후 연구기간은 단계 또는 전체기간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단계기간 내의 연차 개념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집행하면 되며 단계기간 내의 이월이라는 개념 적용이 안되고 다음 단계로의 이월은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후 가능합니다.
	이월금은 같은 비목으로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활동비 이월 후 활동비로 사용하지 않고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안되는 것인지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이월 후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15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동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인건비	각 연차별 시작월과 종료월 인건비 집행시 매년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계기간의 시작월과 종료월에만 일할계산하여 집행하면 되는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과제기간 개념에 있어 당해연도(연차)라는 개념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간으로 인식하면 되며, 단계기간의 시작월과 종료월에만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바, 출산휴가시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월급여액은 연구비로 지급 예정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자하는바, 연구비로 적립이 가능한지,또한 해당 연구원이 육아휴직상태에서 다음자년도 과제에 계속 참여하여 육아휴직 연장 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이중 지원에 해당되므로 이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은 연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15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동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학생인건비	휴학생이 연구참여자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로의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부인건비로 집행해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 · 학사학위과정 · 석사학위과정 · 학석사통합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유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유학생은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15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동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연구재료비	재료비 구입의 경우 과제 직전 구입까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과제 종료 직전 구입한 경우 따로 소명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재료비의 경우 연구기간(단계 또는 전체기간) 전에 집행 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협약기간 이후에 사용 될 재료 즉, 재고 보유 재료비는 인정이 안됩니다. 아여, 연구기간 종료 임박해서 과다하게 구입한 재료의 경우 상기 내용을 위하여 구입 재료의 사용내역을 확인 합니다. 확인 방법은 기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재고 수불 내용 등을 확인 합니다.
연구활동비	야근식대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혁신법에서 야근식대에 대해 인당비용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는 야근식대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용기준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활동비	사업단에서 ○○연구원에 기술정보수집을 맡기고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원에서 사업단의 본부과제 및 주관,공동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에게 자문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사업단에서 외주처인 ○○연구원 연구진에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주처에서 사업단의 본부과제 및 주관,공동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는 경우 책임자 및 연구원은 최소단위 부서가 다른 부서의 인원이라 보기가 힘들며, 해당 집행건은 사업단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들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한 사례라 볼 수가 있고, 이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건에 해당되어 불인정 될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소프트웨어 구입기한이 있는지요?	연구활동비 중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구입하는 연구개발용 소프트웨어는 최종(단계)종료 2개월전까지 도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는 사무용소프트웨어는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동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간접비	본 사업의 연구내용인 열린플랫폼, 열린제작실을 구축하는데 있어, 찾아오시는 수요자분들의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커피머신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환경유지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 ·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상기규정에 의하면, 문의주신 사항은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 사용용도에 부합됩니다.
간접비	사업단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가자는 센터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로 혁신법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 예산에서 선물(기념품) 구입이 가능한지요?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비는 간접비 집행대상에 해당이 되며, 설문조사 답례품이 아닌 기념품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단,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도원회계법인

16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원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인건비	타과제에서 인건비 계상률 100%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에 인건비계상율 0%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계상률의 의미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참여율 개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 범위(참여연구자의 경우 5개 이내, 연구책임자의 경우 3개이내) 에서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혁신법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어 과제별 제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계상율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에 참여연구자 등록은 필요합니다.
	영리법인이 인건비 예산총액 변경없이 참여연구원을 신규인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인력은 부처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이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하므로 변경되는 참여연구원이 신규인력에 해당하고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한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영리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요? 미지급인건비 계상률이 총인건비 계상률에 포함되는지요?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지급인건비 계상율도 총인건비계상율에는 포함되므로 미지급인건비 계상율을 포함한 총인건비계상율이 100%(정부출연기관의 경우는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6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원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연구수당	연구수당을 최초협약금액보다 감액한 후 100% 사용하여 연구수당지급비율보다 직접비 사용비율이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초과사용액은 불인정 될까요?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 포인트 초과하지 않으면 불인정 되지 않습니다.
연구활동비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에만 100% 참여하는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을 위한 사무용 PC를 연구비 직접변경을 통해 구매가 가능할까요?	사무용PC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용도에 해당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직접 변경을 통한 구매는 불가합니다.
	구독서비스 등 이용시 이용기간이 연차연구기간 이후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비용은 불인정 되나요?	구독서비스 이용기간이 연차연구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라도 총 이용기간이 단계연구기간 내에 있는 경우라면 구독시점에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결제 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16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원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간접비	비영리법인에서 타기관으로 연구과제가 이관되는 경우 연구비 이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직접비의 경우 이관시점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이관하시면 되며 간접비의 경우 이관시점까지 사용한 수정직접비금액에 이관전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관하시면 됩니다.
사용기준	혁신법 적용으로 수정계획서상 연구비 비목별 세부소요명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요?	혁신법 적용으로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만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물품 구매 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결정을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의 합목적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전승인사항에 부합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16 Q&A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도원회계법인 연구개발기관 질의사항]

구분/연구비항목	질의내용	답변
연구개발기관 내부거래	연구개발기관 내부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연구개발비로 계상가능한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에 의거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경우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사용료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규정과 사용증명 (사용시간, 결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산주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수수료 납부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회계법인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단계기간내 연차연구기간 종료시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사업비 집행등록 완료하여야 하며 위탁회계법인은 그로부터 2개월이내 연차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정산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각 연차종료시 연1회 납부해야합니다.
집행비율 산정	2021년 이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수당 및 간접비 초과집행 불인정 관련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시 현물 제외하는지 및 2020년 연구개발과제 정산시 현물 포함하는지요?	혁신법 사용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시 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2021년 이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현물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접비 집행비율을 산정하시되 2020년도 연구개발과제는 종전방식대로 현물을 포함하여 직접비 집행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V. 연구비 윤리의식

1 연구비 윤리

연구 윤리

- 연구자가 정직하고 정확하며 성실한 태도로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양식(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정보센터 용어사전 인용)

장비 윤리

-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바람직하고 책임 있는 구매、등록、운영、활용、처분을 위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규범(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교육자료)

연구비 윤리

- 연구책임자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비 사용기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최대 10년 범위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연구비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 부과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65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클린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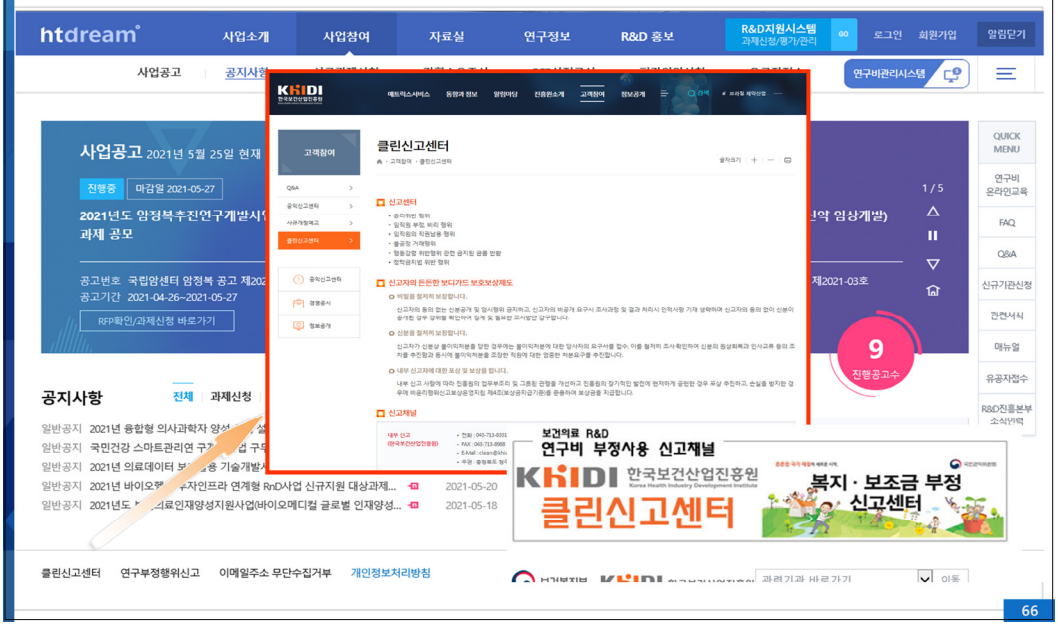

66

3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신고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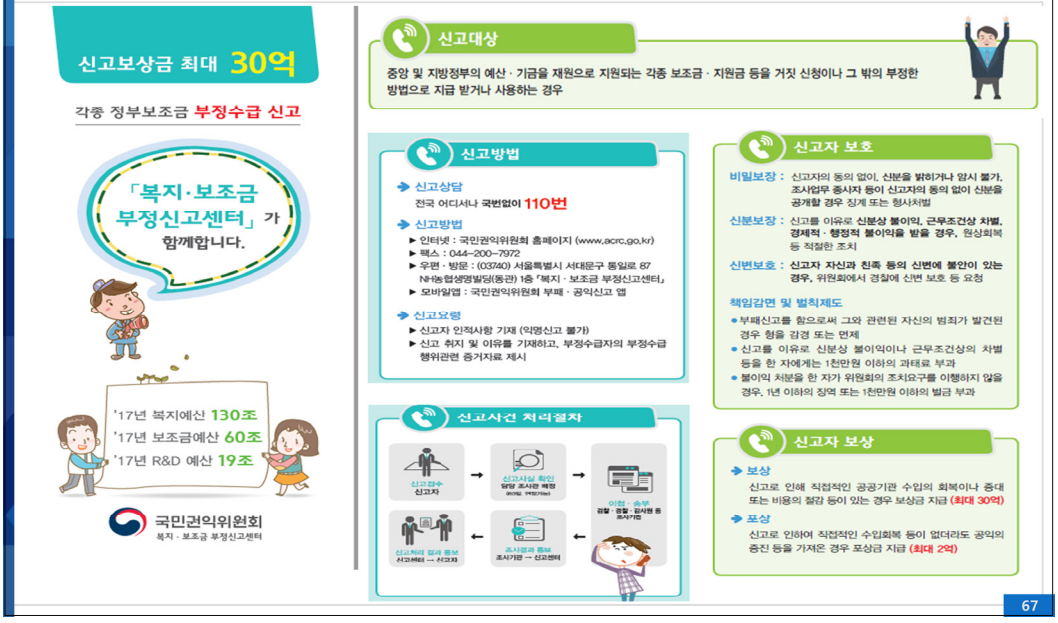

67

4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수급 신고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엠바고 없음

종보담당관실	(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	2021. 5. 6. (목)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배문규 ☎ 044-200-7741
담당자	안철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자 보상금 등 4억 1천여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17여억 원
- 어린이집 보조금 신고자에게 1억 2천여만 원 지급 -

□ 어린이집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4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여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1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4억 1천 485만 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부패행위(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를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 주요 지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6억 1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2천 612만 원을 지급했다.

피신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일 8시간 상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식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됐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돼 있는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5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 2천 174만 원을 지급했다.

다른 사례로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8천여만 원이 환수됨에 따라 보상금 2천 471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 응급의료무선 통신망사업에 참여하면서 통화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중 1곳에 과징금 3억 5천여만 원이 부과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포상금 3천만 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부패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할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부패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68

5 연구책임자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활성화 안내
- '21년도 5월 개시과제(신규, 계속)부터 적용-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 위탁)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활성화

① 연구책임자가 연 1회 이상 연구비 사용 교육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러닝 교육과정 안내

- 협약 대상(신규, 계속)과제 통보 시 연구비 교육 이수 안내
- 연구비 교육 이수 기간(협약 통보 후 3개월 이내) 내 미 이수 시 연구비 시스템의 연구비 집행 일시 중지 예정

② 온라인 교육 실시(교육 1, 2, 3 중 선택 가능)

구분	내용
교육 1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이러닝 교육과정 구분 / 내용 STEP 1: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https://www.kird.re.kr) 접속 - 로그인 ▪ 교육과정 - 전문교육 - 이러닝 STEP 2: ▪ 수강과제명 –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 STEP 4: ▪ 수료증 발급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료 관련 서류 제출
교육 2	• 진흥원 유튜브를 활용한 연구비 사용 · 관리 교육(기본편) 구분 / 내용 STEP 1: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접속 ▪ QUICK MENU - 연구비 온라인 교육 클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이동 STEP 2: ▪ 재생목록 수강목록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1. (연구 협약)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1 2. (공통-연구비 정산)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2 3. (공통-연구비 윤리의식)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3 4. (불인정집행사례)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1, #2, #3 – 각 사업별 6가지 동영상 모두 수강 STEP 3: ▪ 수강완료 후 댓글로 인증 – (예시) 수강완료입니다 등 수강하였다는 댓글을 자유롭게 작성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강 관련 서류 제출
교육 3	• 진흥원 유튜브를 활용한 연구비 사용 · 관리 교육(심화편) 구분 / 내용 STEP 1: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접속 ▪ QUICK MENU - 연구비 온라인 교육 클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이동 STEP 2: ▪ 재생목록 수강목록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1.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1 2.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2 3.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3 4.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Q&A #4 – 각 사업별 4가지 동영상 모두 수강 STEP 3: ▪ 수강완료 후 댓글로 인증 – (예시) 수강완료입니다 등 수강하였다는 댓글을 자유롭게 작성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강 관련 서류 제출

69

6 통합Ezbaro시스템 상시점검 강화

상시점검

-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EZbaro'에 입력한 연구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

온라인 정산

- 연구기관이 '통합EZbaro'에서 생성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관련 증빙 포함)를 전문기관과 위탁정산기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산 완료 후 자동 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 연도별 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70

VI. 연구비 사용 정산 문의처 안내

1 연구비 사용 정산 문의처

위탁정산기관 및 제도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도원회계법인	허현실	070-5130-7943	KHIDI@doac.co.kr
	송지혜	070-5130-7945	KHIDI@doac.co.kr
정동회계법인	전혜진	070-8680-1496	hjjeon@jdac.co.kr
	이한주	070-8680-1515	hanju@jdac.co.kr
	김은경	070-8680-1655	ekkim@jdac.co.kr
	전지혜	070-8680-1654	jihyejeon@jdac.co.kr
연구개발혁신법 등 제도문의		https://www.ntis.go.kr/rndcall/inquire/list.do	

72

1 연구비 사용 정산 문의처

HTDream 챗봇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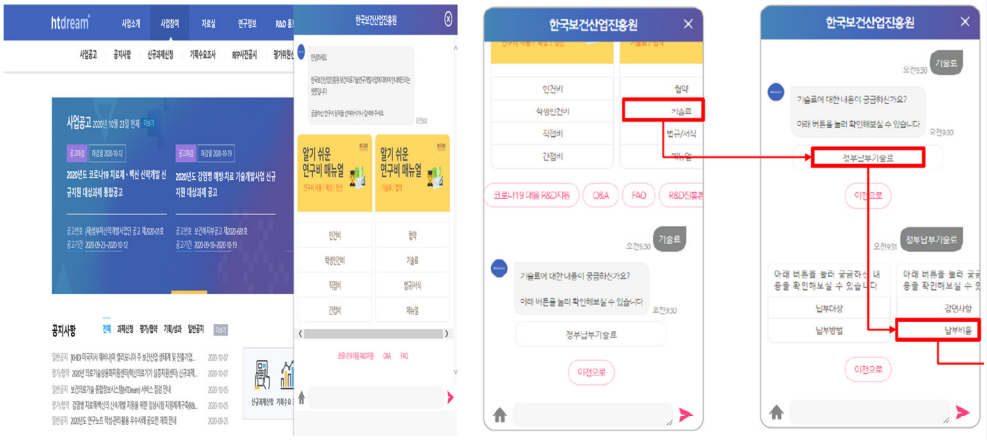

73

감사합니다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협약안내문

2 협약안내문

보건의료R&D 협약·연구비 지급 절차 및 안내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연구기관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통보받은날부터 20일 이내에 계획서 제출**
  - * 양식: HTDream-자료실-규정/서식-관련서식 또는 과제담당자 별도안내
  - * 제출방법: HTDream-R&D지원시스템-(연구책임자) 작성·제출-(기관담당자) 승인

❒ 연구비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6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적용
- **위탁정산수수료**는 '연구활동비'에 산정(첨부 2 참조)
  - *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 협약 체결

- 수정계획서 보완 후 진흥원장과 연구기관장이 체결(신규과제만 해당)
  - * 협약신청: HTDream-R&D지원시스템-(기관담당자) 협약신청
  - -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 연구비 지급

- **'통합Ezbaro'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구비 관리계좌 및 카드사는 '통합Ezbaro 참여은행 및 카드사' 중 연구기관에서 선택
  - **연구자** 및 **연구기관 담당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서 별도 회원가입 필요
-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는 '통합Ezbaro' **'연구비 집금 및 지급관리'에서 '지급계획' 수립** 및 **'연구비 수령계좌 등록'** 필요

  ※ 통합Ezbaro 사용방법 등은 GAIA/통합 Ezbaro 콜센터 1833-2785 문의

❐ 기타 안내사항

- **협약변경**(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 제74조 등을 준용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금부담금 감면 연계 제도**(해당 시)
  -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희망기관은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첨부 3)'를 작성하여 신청, 수정계획서에 반영
- **연구개발비 집행 컨설팅**(상시점검·온라인 정산)
  - (상시점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EZbaro'에 입력한 연구비 집행 내역과 증빙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
  - (온라인정산) 연구기관이 '통합EZbaro'에서 생성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관련 증빙 포함)를 전문기관과 위탁정산기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산 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
- **연구책임자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실시**(필수)
  -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미이수한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연구비를 일시적으로 집행 중지 할 수 있음)
  - 온라인 교육(교육 1, 2, 3 중 선택 가능)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교육 1</td><t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이러닝 교육과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STEP 1</td><t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https://www.kird.re.kr) 접속 - 로그인
■ 교육과정 - 전문교육 - 이러닝</td></tr>
<tr><td>STEP 2</td><td>■ 수강과제명
-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td></tr>
<tr><td>STEP 3</td><td>■ 수료증 발급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료 관련 서류 제출</td></tr>
</table></td></tr>
<tr><td>교육 2</td><td>• 진흥원 유튜브를 활용한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기본편)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STEP 1</td><td>■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접속
■ QUICK MENU - 연구비 온라인 교육 클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이동</td></tr>
<tr><td>STEP 2</td><td>■ 재생목록 수강목록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1. (연구 협약)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1
2. (공통-연구비 정산)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2
3. (공통-연구비 윤리의식)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3
4. (불인정집행사례)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1, #2, #3
- 각 사업별 6가지 동영상 모두 수강</td></tr>
<tr><td>STEP 3</td><td>■ 수강완료 후 댓글로 인증
- (예시) 수강완료입니다 등 수강하였다는 댓글을 자유롭게 작성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강 관련 서류 제출</td></tr>
</table></td></tr>
<tr><td>교육 3</td><td>• 진흥원 유튜브를 활용한 연구비 사용 ·관리 교육(심화편)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STEP 1</td><td>■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접속
■ QUICK MENU - 연구비 온라인 교육 클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이동</td></tr>
<tr><td>STEP 2</td><td>■ 재생목록 수강목록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1.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1
2.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2
3.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3
4.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Q&A #4
- 각 사업별 4가지 동영상 모두 수강</td></tr>
<tr><td>STEP 3</td><td>■ 수강완료 후 댓글로 인증
- (예시) 수강완료입니다 등 수강하였다는 댓글을 자유롭게 작성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강 관련 서류 제출</td></tr>
</table></td></tr>
</table>

- 교육 1, 2, 3의 수강 관련 서류에 맞게 양식*을 작성하여 협약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교육 1 제출서류: 연구책임자 연구비 사용교육 이수 목록, 수료증
    교육 2, 3 제출서류: 연구책임자 연구비 사용교육 이수 목록, 수강확인증
    ※ 제출 양식(수료증 제외)은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 - 공지사항 -
    「보건의료R&D 연구책임자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활성화 안내」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 [첨부1]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
[첨부2]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
[첨부3]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
[첨부4]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온라인 정산 실시 안내

첨부 1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

지원확정 통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기관
↓	
계획서 수정·보완	○ **수정·보완 및 전산제출 기간: 안내일부터 20일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의견 반영하여 계획서 보완 [HTDream 로그인(연구책임자)-R&D지원시스템-평가-평가결과확인] * 평가결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양식: HTDream-자료실-규정/서식-관련서식 또는 과제담당자 별도안내 - 제출방법: HTDream-R&D지원시스템-(연구책임자) 제출-(기관담당자) 승인
↓	
협약체결 * 계속과제의 경우 본 절차 생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 **협약 안내일부터 30일 이내** [HTDream 로그인(기관담당자)-R&D지원시스템-협약/정산-과제협약체결]
↓	
연구비 지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관연구기관(정부출연금 **100% 지급**) **['통합Ezbaro'를 통한 지급]** - 연구비 관리계좌 및 카드사는 '통합Ezbaro 참여은행 및 카드사' 중 연구기관에서 선택 - 연구자 및 연구기관 담당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gaia.go.kr)에서 별도 회원가입 필요 - 주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는 '통합Ezbaro' '연구비 집금 및 지급관리'에서 '지급계획' 수립 및 '연구비 수령계좌 등록' 필요 * 통합Ezbaro 사용방법 등은 GAIA/통합 Ezbaro 콜센터 1833-2785 문의

* (연구개발비 계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6호)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적용
* (위탁정산수수료)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입금) 통합이지바로의 민간부담금 가상계좌로 해당연도 연구종료 3개월 전까지 입금
  - 단, 연구수행기관이 '일괄지급유형'일 경우, 해당 연구기관 계좌로 입금
* (협약변경 및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 제74조 등을 준용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8조제2항을 준용

첨부 2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526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283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723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322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813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62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926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72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44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5천원 증액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과제(위탁과제 제외) 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 1과제(단독과제): 가산금 없음
- 공동 1개 기관(과제): 수수료의 10퍼센트 가산
- 공동 2개 기관(과제) 이상: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기관이 수행하는 주관, 공동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산수수료 산정 시 제외

* 연구개발비 규모(당해연도 현금총액):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 혁신법 시행에 따라 총괄과제의 경우 각 **세부과제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세부과제 개념 삭제)**,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3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해당)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

○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중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인력을 본 표에 작성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단위: 천원)

사업명		과제 번호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		
총 정부출연금	*000천원*		

번호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채용구분*	당해연도 해당 인건비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		감면 금액 (c)	최종 당해연도 매칭금액	
						현금 (a)	현물 (b)		현금 (a'= a-c)	현물 (b'= b+c)
1			*YYYY.MM.DD*	*현금감면*						
2				*기준채용*		*현금 감면 해당없음*				
3				*현금감면*						
4										
총 계										

* (현금감면)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한 연구원
(기준채용) 총 수행기간 내 출연금 총액 5억원 이상 과제로 현금 감면을 받기 위해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을 충족한 연구원
** 감면액은 당해연도 현금 매칭금액을 초과할수 없으며, 변경 전후 매칭금액 총액은 같음.

과제 규모	청년인력 신규채용 적용 기준	
	기준채용인원	현금감면 적용(총 채용인원-기준채용인원)
5억원 미만	0명	총 1명 이상 채용시 (채용인원 전체 적용)
5억원~10억원	1명	총 2명 이상 채용시 (채용인원-1명 적용)
10억원~15억원	2명	총 3명 이상 채용시 (채용인원-2명 적용)

*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한도 내에서 현금감면 적용 가능하며, 기준채용과 현금감면 인력 중복 불가

(증빙서류)

1. 채용확인서 또는 채용계획서 (재직증명서 등)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여부 확인용, 고용 시 제출)
3.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유지 확인용, 고용 이후년도부터 제출)

첨부 4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온라인 정산 실시 안내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비 상시점검 및 연구비 온라인 정산 실시**
- 연구기관의 연구비 적정 집행 유도 및 연구행정, 일괄정산 부담 완화

❒ 연구비 상시점검 강화란

-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에 입력한 **연구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
  - 연구과제 지원확정 통보시 **위탁정산기관 담당 회계사를 사전 지정** 및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과제 종료시까지 점검 및 컨설팅**
    * 통합EZbaro시스템을 적용받는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 사용내역 입력,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내역 입력 후 집행(관련 증빙 업로드 필수)**
      ⇨ 유의사항: 연구비 카드 결제일 도래 후 미결의 건 발생시 연구비카드 사용정지 및 시스템 내 결의 일시 거절됨

기대효과	기존의 연구기간 대비 연구비 집행율 상시점검을 보완하고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더욱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유도

❒ 연구비 온라인 정산이란

- 연구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생성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관련 증빙 포함)**를 **전문기관과 위탁정산기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산 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

기대효과	정산서류 우편제출 업무에서 탈피하여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

❐ 참고자료

- 연구수행기관 정산매뉴얼(가이아(GAIA) https://www.gaia.go.kr 자료실 - 매뉴얼)
- 위탁정산매뉴얼(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 https://www.htdream.kr 자료실 - 매뉴얼)

※ 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3. 연구책임자 교육 활성화

3 연구책임자 교육 활성화

보건의료R&D사업 연구책임자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활성화 안내
- '21년도 5월 개시과제(신규, 계속)부터 적용 -

(R&D평가지원단, R&D사업지원팀, 2021.08.10.)

◈ 배경 및 필요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에 따라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및 윤리의식 고취가 더욱 중요한 시점임**. 따라서 **연구책임자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참여 활성화** 노력 필요

* 연구책임자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비 사용기준 등의 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최대 10년 범위의 참여제한 또는 정부연구비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 부과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

- 연구책임자(주관, 공동, 위탁)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활성화

① 연구책임자가 연 1회 이상 연구비 사용 교육을 필수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러닝 교육과정 안내

- <u>협약 대상(신규, 계속)과제 통보 시 연구비 교육 이수 안내</u>
- 연구비 교육 이수 기간(협약 통보 후 3개월 이내) 내 미 이수 시 연구비 시스템의 연구비 집행 일시 중지 예정

② 온라인 교육 실시(교육 1, 2, 3 중 선택 가능)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교육 1</td><t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 이러닝 교육과정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STEP 1</td><t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https://www.kird.re.kr) 접속 - 로그인
■ 교육과정 - 전문교육 - 이러닝</td></tr>
<tr><td>STEP 2</td><td>■ 수강과제명
- 연구협약 및 연구개발비 관리</td></tr>
<tr><td>STEP 3</td><td>■ 수료증 발급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료 관련 서류 제출</td></tr>
</table></td></tr>
<tr><td>교육 2</td><td>• 진흥원 유튜브를 활용한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STEP 1</td><td>■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접속
■ QUICK MENU - 연구비 온라인 교육 클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이동</td></tr>
<tr><td>STEP 2</td><td>■ 재생목록 수강목록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1. (연구 협약)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1
2. (공통-연구비 정산)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2
3. (공통-연구비 윤리의식)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3
4. (불인정집행사례)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1, #2, #3
- 각 사업별 6가지 동영상 모두 수강</td></tr>
<tr><td>STEP 3</td><td>■ 수강완료 후 댓글로 인증
- (예시) 수강완료입니다 등 수강하였다는 댓글을 자유롭게 작성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강 관련 서류 제출</td></tr>
</table></td></tr>
<tr><td>교육 3</td><td>• 진흥원 유튜브를 활용한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심화편)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STEP 1</td><td>■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접속
■ QUICK MENU - 연구비 온라인 교육 클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 이동</td></tr>
<tr><td>STEP 2</td><td>■ 재생목록 수강목록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식의약품안전연구개발사업
1.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1
2.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2
3.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 #3
4. 혁신법을 반영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및 사용 기준Q&A #4
- 각 사업별 4가지 동영상 모두 수강</td></tr>
<tr><td>STEP 3</td><td>■ 수강완료 후 댓글로 인증
- (예시) 수강완료입니다 등 수강하였다는 댓글을 자유롭게 작성
■ 진흥원 협약 담당자에게 수강 관련 서류 제출</td></tr>
</table></td></tr>
</table>

(교육 1) 수료 관련 제출서류

① 연구책임자 연구비 사용 교육 이수 목록(별첨. 1)

② 수료증

(교육 2, 3) 수강 관련 제출서류

① 연구책임자 연구비 사용 교육 이수 목록(별첨. 1)

② 수강확인증(별첨. 2)

연구비 사용교육 관련 주의사항

① 연구사업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수

(예: 사업개시일 21년 6월 1일,

1차 이수기한일 21년 8월 31일, 2차 이수기한일 21년 9월 30일)

② 미 이수에 대한 패널티

1차: 연구사업비 카드사용 일시정지

2차: 연구사업비 (전체)집행 정지

※ 사업단 소관 연구과제의 경우 사업단에서 위 ①번 사항을 자체 관리하여 ②번 사항을 진흥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담당자 정보

구분	담당자	이메일
R&D평가지원단 R&D사업지원팀	이신복	myangel@khidi.or.kr
	이유선	yysun@khidi.or.kr
	신선하	tatayay@khidi.or.kr

※ 서류 제출 시 담당자 모두에게 메일 발송

4.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4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 비율 제한에 대한 내부기준 안내

(R&D평가지원단, R&D사업지원팀, 2021.04.)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1.1 시행)」 시행에 따라,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이 제한***되어 정산 시 불인정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존 연구개발비 관리규정 및 관리지침에는 계상 비율의 제한 없음
  - **보건의료R&D사업의 특성상**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에 많은 연구비를 사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 비율 제한에 대한 정산계획

- 보건의료R&D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당초 수정계획서 대비 직접비 4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진흥원 사업담당자에게 공문 보고* 시 정산에 반영(인정)**

  * 보고내용이 해당 과제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됨

  ※ 당초 수정계획서 상 직접비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하였을 경우 자동 인정 처리됨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설명자료 질의답변

Q23.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이 **정산 시 해당 연구비 사용을 인정**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을 포함함

3 관련 행정규칙(고시·훈령)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R&D사업 지원방안

5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R&D사업 지원방안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R&D사업 지원방안

(R&D평가지원단, R&D사업지원팀, 2021.)

❒ 추진배경

-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장기화('20.2.23~)됨에 따라, R&D사업 추진시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속 지원 필요**
  -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공백 발생 최소화**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원방안

- **(협약변경 신청기한·횟수 완화) 코로나19 등 재난사유**로 연구지연이나 공백 발생 시, 연구기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도록 **협약변경 신청기간**(과제 종료 1개월 전) **및 횟수**(1회에 한함), **연장기간 제한 완화** 첨부1
  - 신청기한, 횟수, 연장기간 제한 없이 협약변경 가능
- **(연구시설·장비 구입기한 완화)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 또는 임차 기간(과제종료 2개월 전)을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로 완화**
- **(소프트웨어 계약기한 완화)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연구용 소프트웨어 계약기한(과제종료 2개월 전)을 **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로 완화**
- **(코로나19 대처·예방 경비 지원)** 코로나19 대처·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부가경비의 연구비**

집행 허용 첨부2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국내외 행사(학술대회, 세미나 등)나 출장 등의 취소수수료(위약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부가경비(소독, 물품구입 등)를 연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 **(연구공백 발생시 연구편의 제공)** 연구기관 폐쇄, 핵심 연구인력 격리조치에 따른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연도별 과제 종료일까지)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각 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장 허용** 첨부3
  - 제출기한 **최대 2개월 연장**(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시까지)
- **(중소기업 인건비 인정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인력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인력까지 확대** 지원 첨부4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이 '21년 R&D사업 참여시 신규채용인력 뿐만 아니라 **계속고용인력(기존인력)도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기존인력은 인건비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연구참여 확약서 등)와 피해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연도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단, 인건비 현금 계상은 연구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시 불인정)**
- **(중소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허용** 첨부5
  -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이 '21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기관인 경우, **납부기한일 전까지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간 연장 허용**
- **(비대면 연구비 사용 교육 지원)** 연구기관의 협약 및 정산업무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혁신법 등을 반영한 **'연구비 관리 매뉴얼'과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배포**('21.7월~)

  * 주요 내용: 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 협약·정산 절차, 주요 불인정사례 등

매뉴얼 및 동영상 확인 사이트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htdream.kr)	• (매뉴얼) - 자료실 - 매뉴얼 - 사업관련 매뉴얼 - 연구비 사용 안내 • (동영상) - 퀵메뉴 - 연구비 온라인 교육

첨부 1 협약변경, 연구시설 장비 구입, 소프트웨어 계약기한 완화

❒ 협약변경 신청기한·횟수 완화

- **(기본원칙)** 과제종료 1개월전 협약변경 신청, 1회 한해 최대 1년 연장
- **(완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에 따른 재난 등의 사유인 경우 협약변경 신청기한, 횟수, 연장기간 제한 없음
- **(처리방법)** 협약변경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연구기관→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 후 승인여부 검토(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

❒ 연구시설·장비 구입기한 완화

- **(기본원칙)** 과제종료 2개월전까지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 **(완화내용)**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 **(처리방법)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제출(연구기관→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 후 승인여부 검토(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

❒ 소프트웨어 계약기한 완화

- **(기본원칙)** 과제종료 2개월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 **(완화내용)**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 시,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 계상 가능
- **(처리방법) 구체적 사유를 포함하여** 공문으로 제출(연구기관→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 후 승인여부 검토(진흥원 연구과제 담당자)

첨부 2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 배경

-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련 **경비 집행에 대한 문의 급증**으로 R&D사업 연구비 집행 기준을 아래와 예외적으로 인정함

〈참고: 코로나19 관련 최근 주요 질문〉

① **(대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학회참석이나 행사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경비(취소 수수료 등)를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나요?

② **(예방)** 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연구비로 구입할 수 있나요?

❒ 코로나19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 (**대처**)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학회 취소에 따른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 (**예방**) 연구 수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해당 과제와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단,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 기타

- 과제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위약금 등 포함) 등은 연구비로 집행 불가**

❐ 경비 인정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구분 (사용용도)	인정기준	증빙서류
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연구활동비- 연구실 운영비)	해당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마스크) 구입경비는 직접비에서 인정	•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 내부결재 구비, 내부결재 시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참석자, 소요경비 내역(다과비, 식대, 감염 예방물품 구입 등)포함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용)	기 납부한 학회등록비 취소에 따른 수수료 및 전액 직접비에서 인정	• 학회참석을 위해 학회 측과 교신한 메일, 학회 취소를 인지한 시기에 대한 자료,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해외 출국 전면금지 안내문, 학회 예정지 코로나 확진자 발생 기사 등 합리적인 자료 구비
출장(항공, 숙박 등) (연구활동비- 출장비)	기 결재한 항공 및 숙박비 취소 수수료 및 전액 직접비에서 인정	•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해외출국 전면금지 안내문,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합리적인 자료 구비 • 단, 계약 여행사 폐업/부도 시 계약관련 일체 서류, 환불 규정, 상호간 메일, 여행사의 폐업/부도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구비 ▸ (폐업)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사업자 상태→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 (부도) 금융결제원(www.kftc.or.kr)→당좌거래정지자 조회→사업자(주민) 번호, 법인명 또는 대표자 성명으로 조회

첨부 3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 (기본원칙)
  - **(사용내역 보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제출
  - **(사용실적 보고서)** 각 단계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연장내용)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상황을 고려**하여 **과제별 제출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

  *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완료 시에만 이월금이 반영되므로 관련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제출기한일자 연장 여부 결정 필요**(단, 단계 이월은 사전승인사항임)**

  ** 연구기간 변경없이 연구비 집행기간(협약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은 아님

- **(조치방법)**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사용내역 보고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이전에 **해당 연구과제의 제출지연사유 등*을 위탁정산기관으로 제출**

  * 연구과제정보, 제출기한일자, 제출완료예정일자, 제출지연사유(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근무기간포함) 등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적용기간)**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

첨부 4 중소기업 R&D 참여인력(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구분	중소기업 R&D 참여인력(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지원대상	• **'21년 R&D 협약 과제**
지원내용	□ 피해 중소기업이 R&D사업 참여시 신규채용인력 뿐만 아니라 **계속고용인력(기존인력)도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 • 기존인력은 인건비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연구참여 확약서 등)와 피해 중소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연도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허용(단, 인건비 현금 계상은 연구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시 불인정)**
피해 중소기업 기준	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소재 중소기업 ※ 향후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되는 경우 추가지역도 포함 ③ **소속 임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확진)**된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 **(旣협약 과제)** '21년 과제 수행중 소속 임직원이 감염(확진)된 경우 • **(접수후 협약前 과제)** '21년 과제 협약체결전 소속 임직원이 감염(확진)된 경우 • **(공고예정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소속 임직원이 감염(확진)된 경우 □ 협약당시(또는 접수당시)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과제수행 중 **상기기준에 부합**하여 **'21년 당해연도 협약변경 승인기간(과제종료 1개월 전) 이내 수행기관이 협약변경을 신청**할 경우 **검토 후 지원 가능**
처리방법 및 제출서류	□ 처리방법 • 연구과제 종료후 위탁정산기관으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관련 증빙 일체 제출 □ 제출서류 • 기존인력이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연구참여확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증명 등 • 피해 입증 서류: 매출액 10%이상 감소 증빙서류, 소재지 명기 서류 등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000과 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부서명	
국가연구자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직급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과제명(과제번호):

나. 연구참여기간: 20 . . . ~ 20 . . .

다. 담당업무(역할):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담당할 수 없음

라. 연구기관의 급여 기준액: 월 원(세금 포함)

마. 본 연구과제 인건비 지급율: %(세금 포함)

바. 본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지급액: 월 원(세금 포함)

마. 지급방법: 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

성 명		직 급	
소속		부서명	
국가연구자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위와 같이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키로 합의하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자: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OOOO 기관장 귀하

첨부 5 중소기업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구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지원대상	• **'21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과제**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일 전까지 연장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
피해 중소기업 기준	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소재 중소기업 ※ 향후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되는 경우 추가지역도 포함 ③ **소속 임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확진)**된 사실이 있는 **중소기업** • **(既협약 과제)** '21년 과제 수행중 소속 임직원이 감염(확진)된 경우 • **(접수후 협약前 과제)** '21년 과제 협약체결전 소속 임직원이 감염(확진)된 경우 • **(공고예정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소속 임직원이 감염(확진)된 경우
처리방법 및 제출서류	□ 처리방법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한일 전까지 신청 □ 제출서류 • 피해 중소기업의 납부연장 신청(연장기한 명시) 공문 • 피해 입증 서류: 매출액 10%이상 감소 증빙서류, 소재지 명기 서류, 소속 임직원의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대상 통지서 등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현황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현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0. 7월 기준)

총 59개 기관 지정 (대학 53, 출연(연) 2, 특정(연) 4)

구분	기관명	
	연구책임자 단위	연구기관 단위
대학 (53개)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금오공대, 단국대, 동국대, 동아대, 목포대, 부경대, 부산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교통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양대	
출연(연) (2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특정(연) (4개)	DGIST, KAIST	GIST, UNIST

※ '가나다' 순으로 정렬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목록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목록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목록

(기관명 가나다 순)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지정일 : 2019. 12. 30. ~			
1	가천대학교		성균관대학교
2	강원대학교		수원대학교
3	건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4	경남대학교		아주대학교
5	경북대학교		연세대학교
6	경상대학교		영남대학교
7	경성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8	경희대학교		인천대학교
9	고려대학교		인하대학교
10	단국대학교		재료연구소
11	동의대학교		전남대학교
12	목포대학교		충남대학교
13	부경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4	삼육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5	서울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16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지정일 : 2020. 07. 23. ~			
1	전북대학교	2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지정일 : 2020. 12. 23. ~			
1	계명대학교	9	제주대학교
2	공주대학교	10	포항공과대학교
3	광주과학기술원	11	한국과학기술원
4	국민대학교	12	한국식품연구원
5	대구한의대학교	1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6	부산대학교	14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상지대학교	15	호서대학교
8	서강대학교		

8. 종합FAQ

8 종합FAQ

인건비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인건비	내부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에 대해 2021.06월까지 참여시키고 인건비 지급 후, 2021.07월부터는 참여율을 0%로 하여 인건비를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 합니다. ※ 동수행가능 과제수: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 동시수행 가능 (3책5공)
인건비	신규채용 현금인건비와 관련하여 동일 수행기관이 수행중인 타과제에 신규인력으로 등재해서 현금 인건비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예: 해당 과제60%, 타 과제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의 합이 월별 100%가 초과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단계연구기간내에서 각 연차가 매년 8월 19일로 종료되며, 본 연구기관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17일 입니다. 이때, 각 연차별 시작월과 종료월 인건비 집행 시 매년 일할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단계기간의 시작월과 종료월에만 일할 계산하여 집행하면 되는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과제기간 개념에 있어 당해연도(연차)라는 개념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기간 전체를 하나의 기간으로 인식하면 되며, 단계기간의 시작월과 종료월에만 일할계산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2021년 과제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서상 6월부터 12월까지 신규인력(계획서상에는 미지정됨) 채용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채용대상자의 사정으로 계획대로 신규채용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 다른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당초 계획한 인건비 예산 내에서 변경된 신규채용기간에 인건비를 모두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리기관이 현금 인건비를 변경(증/감)하려면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승인을 득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예를 들어, 당초 7월부터 12월까지 월 200만원씩 1,200만원으로 계획되었던 인건비를 9월부터 12월까지 월 250만원씩 1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집행 가능한지요?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인건비	영리법인이 인건비 예산총액 변경 없이 참여연구원을 신규인력으로 변경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중소 중견기업의 신규인력은 부처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이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하므로 변경되는 참여연구원이 신규인력에 해당하고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예산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한 별도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영리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른 참여연구자의 인건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참여연구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는 바, 출산휴가 시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월급여액은 연구비로 지급 예정이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바, 연구비로 적립이 가능한지, 또한 해당 연구원이 육아휴직상태에서 다음 차년도 과제에 계속 참여하여 육아휴직 연장 후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이중 지원에 해당되므로 이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은 연구비로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현금계상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계상 가능하고, 그 밖의 경우는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합니다.
인건비 현금계상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에서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을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50%를 초과하여 현금인건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이때, 진흥원의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진흥원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에 명시하여 협약하는 경우 •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여 승인받은 경우(계획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진흥원과 연구개발기관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 그 밖에 진흥원장이 인정함을 알 수 있는 추가 방법으로 보완 필요)
인건비 현금계상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증액 또는 감액은 사전승인 대상인데 참여연구자 개인별 인건비의 증감도 사전승인 대상인지요?	개인별 인건비 증감이 아닌 현금인건비 총액의 증감시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인건비계상률	타과제에서 인건비 계상률 100%로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제에 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계상률의 의미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참여율 개념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 범위(참여연구자의 경우 5개 이내, 연구책임자의 경우 3개 이내)에서 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혁신법 매뉴얼에서 설명하고 있어 과제별 제한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건비계상률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에 참여연구자 등록은 필요합니다.
인건비계상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인건비계상률 산정 매뉴얼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 연(월)급여이며,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합니다. 연(월)급여는「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인건비계상률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3장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계상률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0조제4항제3호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제외가 가능.	단기근로소득의 예시로는, 편의점·음식점·카페·마트·택배배송 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교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회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타 단기근로소득명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말함. 단기근로소득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지요?	
학생인건비	휴학생이 연구참여자로 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로의 집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부인건비로 집행해야 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의거, 휴학생은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산학협력단 과제 수행에 있어 2020년 06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0년도 연구과제에서 본교 휴학생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 체결 후 내/외부 인건비로 계상 및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정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허용" 본 산단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분들의 인건비 기준액이 산단 임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산단 임용처리 없이 외부인건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인건비(기타소득) 지급에 대해서 지급대상인 휴학생의 인건비 증빙서류(무소속-4대보험미가입) 제출시, 연구참여확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학생연구원의 신분 및 자격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u>(연구개발비 사용기준)</u>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상기규정에 의하면,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는 고용계약으로 보다는 과제참여계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함) 휴학생의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경우도 학생연구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로 정의된 점을 감안할 때 귀 기관에 소속된 학생연구원의 경우 휴학생의 경우라도 학생인건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지급 인건비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요? 미지급인건비 계상률은 총인건비 계상률에 포함되는지요?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연구활동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는 것임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정부출연기관의 경우는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미지급 인건비	미지급인건비를 연구수당산정시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경우 미지급인건비 총액의 증감이 가능한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총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항목으로 연구수당 증액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지급인건비는 증액 불가합니다.

연구수당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수당	연구수당을 계획대로 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비의 집행비율이 감소한 경우 연구수당도 불인정 처분되는 것인지요?	국가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의하면 연구수당은 예산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회수됩니다. [연구수당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20/100)]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연구수당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요?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입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수당	연구수당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수당 비율 초과금액 산정 시, 최초협약금액 또는 변경 후 예산금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연구수당은 최초 협약체결 금액보다 증액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연구수당 비율 초과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연구수당	연구수당을 최초협약금액보다 감액한 후 100% 사용하여 연구수당지급비율보다 직접비 사용비율이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초과사용액은 불인정 될까요?	연구수당지급비율은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최초협약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구수당 지급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지 않으면 불인정 되지 않습니다.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산정기초에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에 대한 해석에 있어 "미지급 인건비"를 포함하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미지급인건비 계상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연구수당 계상 시 미지급인건비를 포함 가능합니다.

연구재료비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재료비	재료비 구입의 경우 과제 직전 구입까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과제 종료 직전 구입한 경우 따로 소명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재료비의 경우 연구기간(단계 또는 전체기간) 전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협약기간 이후에 사용될 재료 즉, 재고 보유 재료비는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연구기간 종료 임박해서 과다하게 구입한 재료의 경우 상기 내용을 위하여 구입 재료의 사용내역을 확인 합니다. 확인 방법은 기관별로 다르며 일반적으로 재고 수불 내용 등을 확인 합니다.

연구활동비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활동비	대학병원 간호사로 현재 육아휴직중인 선생님을 단기고용(4개월)하고자 합니다. 단기고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단기고용(아르바이트)에 따른 비용은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할 것을 권고 드리며, 한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 산단의 방침이 있는 경우 해당 방침 따르시면 됩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활동비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활동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후 연구활동비(연구과제운영경비)가 직접비 5%이내일 경우 정산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후 연구활동비(연구과제운영경비)가 정산면제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비율에 관계없이 모두 정산대상입니다.
연구활동비	사업단에서 OO연구원에 기술정보수집을 맡기고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집행하였습니다. OO연구원에서 사업단의 본부과제 및 주관, 공동과제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에게 자문비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사업단에서 외주처인 OO연구원 연구진에게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를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주처에서 사업단의 본부과제 및 주관, 공동과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에게 자문비를 지급하는 경우 책임자 및 연구원은 최소단위 부서가 다른 부서의 인원이라 보기가 힘들며, 해당 집행건은 사업단 과제의 참여하는 연구원들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한 사례라 볼 수가 있고, 이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건에 해당되어 불인정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연구활동비	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과제에만 100% 참여하는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이 있을 경우 해당 참여연구원을 위한 사무용 PC를 연구비 직접변경을 통해 구매가 가능할까요?	사무용PC는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용도에 해당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직접 변경을 통한 구매는 불가합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활동비	구독서비스 등 이용시 이용기간이 연차연구기간 이후 기간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비용은 불인정 되나요?	구독서비스 이용기간이 연차연구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라도 총 이용기간이 단계연구기간 내에 있는 경우라면 구독시점에 서비스 이용료 전액을 결제 후 연구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야근식대	야근식대를 집행하려고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야근식대에 대해 인당비용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는 야근식대에 대하여는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로 사용기준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연구활동비 간접비 (연구지원비/ 기관공통경비)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1차의료기관 50곳에 임상연구매뉴얼 등의 자료를 담은 USB를 배포하려고 합니다. 해당 USB에는 연구기관의 이름을 새겨서 제작할 예정으로, 비용은 대략 50만원 내외를 예상합니다. 기존 계획서상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집행 가능할지요? 또 가능하다면 어떤 비목에서 집행해야 할지요?	임상연구매뉴얼이 본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즉 본 과제가 임상연구매뉴얼을 만드는 과제라면 해당 매뉴얼 제작/배포를 위한 USB는 과제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장치로 볼 수 있어 연구활동비 집행대상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는 반면, 해당 매뉴얼이 본과제의 목표결과물이 아닌 경우 해당 경비는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기관공통경비에 해당되어 간접비로 집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기간이 총 4년인 연구개발과제에서 통계프로그램(소프트웨어) 구입 시 Perpetual로 구입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해당 소프트웨어는 Annual or Perpetual 단위로 구입 가능)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시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조건이 연단위 / 영구일 경우에는 연단위로 계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소프트웨어 구입기한이 있는지요?	연구활동비 중 소프트웨어활용비로 구입하는 연구개발용 소프트웨어는 최종(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 종료 2개월전까지 도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는 사무용소프트웨어는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구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 및	1차년도 사업기간(2020.11.10-2021.05.09) 종료시점에 2차년도 추가신규채용인력이 사용할 컴퓨터(본체, 모니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사정상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1차년도 사업기간내	2021년 1월 이후 집행분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항목은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중 사무용 기기 및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사무용 소프트웨어	(2021.05.08까지)에 구매를 하면 정산 시 문제 소지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무용 소프트웨어 항목으로 집행하시고,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구입하시면 됩니다.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훈련비	연구중심병원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스터디모임 참가비용을 연구비의 교육훈련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학회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가 아님에도 교육훈련비 지출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비록 학회가 아니더라도 해당 연구과제와 유관된 스터디라면 교육훈련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고려할 주요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스터디를 활용하여 본 연구과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스터디 활용 내역서 첨부. 2. 스터디비용 지급 시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연구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구비로 인정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 내부기준과 관련하여 혹시 설문조사비가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비용이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포함이 된다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처리가 되어야 하며, 직접비의 40%가 한도입니다.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OO대학교 임상시험센터 수행과제와 관련하여 자문비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부과제의 책임연구원이 원내 직원(전산실 소속)의 자문을 얻어 현재 연구대상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자문비 지급 기간은 1년, 매월 100만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 중 1~2회의 부정기 지급과 달리 특정 인원에게 일정금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여부와 구비해야 하는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전문가활용비에 대한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포함되는 항목들의 집행액 합계가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3. 기존규정에서 요구하는 전문가활용비에 대한 적격증빙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u>[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u>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무엇인지요?	보건의료R&D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중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를 당초 수정계획서대비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경우,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개정 전까지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진흥원사업담당자에게 공문으로 보고하여야합니다. 단, 보고내용이 해당과제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가능합니다.
전문가활용비	강사료, 자문료는 다음의 연구활동비의 어떤 세목 예산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요?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전문가활용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간접비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간접비	비영리법인에서 타기관으로 연구과제가 이관되는 경우 연구비이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직접비의 경우 이관시점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이관하시면 되며 간접비의 경우 이관시점까지 사용한 수정직접비 금액에 이관전 비영리법인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이관하시면 됩니다.
간접비비율	간접비비율의 적용시점은?	협약체결시점이 아닌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합니다.
간접비 고시비율	간접비고시비율이 20%인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 고시비율이 30%인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이관받았을 때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20% 이내로 하향조정해야 합니다.
간접비 고시비율	간접비고시비율이 30%인 연구개발기관이 간접비 고시비율이 20%인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이관받았을 때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이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은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30%까지 상향조정 가능합니다.
간접비 (기념품)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여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참가자는 센터직원이 아닌 외부전문가들로 국가	사업단 및 연구단 운영비는 간접비 집행대상에 해당이 되며, 설문조사 답례품이 아닌 기념품은 집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개발혁신법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 예산에서 선물(기념품) 구입이 가능한지요?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단,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간접비 (연구지원비/ 기관공통 경비)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수행사업이 2021년 4월 30일에 종료할 예정으로, 사업단 마무리에 있어 방대한 양의 파쇄자료들이 발생하는 바, 파쇄비용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주신 성격의 파쇄비 집행은 직접비 보다는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기관공통 경비로 집행하셔야 합니다.
간접비	본 사업의 연구내용인 열린플랫폼, 열린제작실을 구축하는데 있어, 찾아오시는 수요자분들의 대기공간 및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커피머신기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환경유지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16조(연구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2. 사업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상기규정에 의하면, 문의주신 사항은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 사용용도에 부합 됩니다.

정산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개발 기간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어느 규정을 따르는지요?	정산 대상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고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집행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2021.1.1.부터 2021.2.28.까지 집행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릅니다.
연구개발 기간	각종 한도 및 비율 검토 시 총 연구개발기간인지, 단계연구개발기간인지, 해당연도연구개발기간인지요?	연구개발비의 각종 한도 및 비율 산정시 단계연구개발기간을 적용합니다.
연구개발 기간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요?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해야 합니다.
사용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언제인지요?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은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비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사용 기준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에는 개정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지요?	계속 수행중인 과제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용 기준	혁신법 적용으로 수정계획서상 연구비 비목별 세부소요명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요?	혁신법 적용으로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만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별적인 물품 구매 대여 등 연구개발비 사용결정을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의 합목적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사전승인사항에 부합되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통합이지 바로시스템	사용내역의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입력은 언제까지인지요?	일괄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일(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통합이지바로에 입력해야 합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증빙	연구에 필요한 재료, 사무용품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기존에 연구실에 방문하는 거래업체에서 제공해주던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품명, 수량,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구매내역이나 결제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요? (당사의 경우 재료비 사용시 구매한 물품들 사진을 찍어서 인수, 검수/사인 후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네, 문의주신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적립금	네이버페이, ssg pay, 카카오페이 등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를 하게 되면 결제 방법 혹은 카드사의 이벤트 등에 따라 할인 또는 적립금이 발생하는바, 이때 발생하는 할인 또는 적립금과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할인시에는 할인된 금액을 연구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적립의 경우는 현금으로 적립되는 경우에는 연구비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이 되므로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비로 여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연구비로 인한 발생이자와 같은 성격으로 즉, 연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미사용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금이 아닌 마일리지 등의 적립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면 상기와 같이 처리를 하고, 현금으로 환산이 불가하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차정산/ 단계정산	복지부 ○○○사업단 과제 진행을 위해 보청기를 월 단위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2차년도가 21년 8월 19일에 종료되고, 3차년도가 20일에 개시되는데 8월 임차료 전액을 2차년도 사업비로 집행해도 될는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연구기간의 개념은 단계기간을 한 기간으로 간주하며, 단계기간내의 연차 개념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사업비 구분이 불필요하므로 8월분 전액을 2차년도 기간에 집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현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한 경우 정산대상이 되는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에 따라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현물부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현물	2021년 이후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수당 및 간접비도 초과집행 불인정 관련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시 현물 제외하는지, 2020년 연구개발과제 정산시 현물 포함하는지요?	혁신법 사용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접비 집행비율 산정 시 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현물을 제외한 금액으로 직접비 집행비율을 산정하되 2020년도 연구개발과제는 종전 방식대로 현물을 포함하여 직접비 집행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정산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과제기간이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보다 짧을 경우 (단계종료 이전에 종료할 경우) 위탁연구개발과제는 별도 정산을 실시하는지요?	각 공동(위탁 포함)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정산 실시하여 전문기관(진흥원)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정산주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수수료 납부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회계법인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보고서를 발행합니다. 단계기간 내 연차연구기간 종료시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구개발비 집행등록 완료하여야 하며 위탁회계법인은 그로부터 2개월 이내 연차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상시점검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정산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각 연차종료시 연1회 납부해야 합니다.
최종정산	최종정산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연구개발기관은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4호(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별지5호(현물부담확인서) 및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산변경	연구개발비 항목내 사용용도별 예산 변경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만 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승인사항 등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목 내 사용용도 변경을 위해서 변경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내부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월금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이월금	비영리기관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이월금 계획 부분에 모니터 구입을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었는데, 현재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획변경 후에 구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이월금 계획변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 시행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단계 내에서는 집행잔액의 이월이 가능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단계)이 종료되어 다음 단계로 이월을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전용, 이월	당초 연구활동비 예산 1억원이 이월 되었는바, 예상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활동비 이월 금액의 50%를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면 연구비의 이월과 관련하여 단계 이월시만 전문사관 사전 승인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이월시 과거 규정과 같이 동일한 세목으로의 이월 등에 대한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수행기관 내에서 자체변경에 의하여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재이월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 이월금을 인건비로 전용사용이 가능하며, 단계 내에서 또는 최종기간 내에서는 재이월도 가능합니다.
이월	연구개발비를 같은 단계 내에서 다음 연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연구개발비는 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별로 정산하게 되므로, 특정 연차에서 남은 연구개발비를 단계 내 다음 연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를 넘어 이월하려는 경우에는 진흥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월	간접비와 연구수당은 이월 가능한지요?	간접비와 연구수당은 다음 단계로 이월불가합니다. * 연구수당 감액(통보), 연구수당 증액(불가) 간접비 감액(통보), 간접비 증액(승인)
이월	현재 2차년도 진행 중으로, 1차년도 연구비 집행 잔액 이월이 불가한지요?	혁신법 시행이후 연구기간은 단계 또는 전체기간 개념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단계기간 내의 연차 개념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계연구기간 내에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수당의 경우 다음단계로의 이월은 불가합니다.
이월	이월금은 같은 비목으로 써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활동비 이월 후 활동비로 사용하지 않고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변경이 안 되는 것인지요?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이월 후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기타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개발기관 종류	주관연구기관인 Koo와 주관-세부간의 협약용 계약서 작성을 통해 협약진행에 있으나, 말씀해 주신 설명회 내용에 따르면 세부과제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주관 혹은 공동으로의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주관/협동/공동/위탁 혁신법: 총괄주관, 주관/공동/위탁 (협동기관 삭제) 협동연구개발기관인 세부기관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 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간 거래(내부시설 및 기자재 사용료, 임상검사비, 분석비, 동물 사육관리비, IRB, 재료비 등)는 연구개발비로 계상가능한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상 가능합니다.

구분/ 연구비항목	질의사항	답변사항
연구개발기관 내부거래	연구개발기관 내부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연구개발비로 계상가능한지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에 의거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 장비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경우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규정과 사용증명 (사용시간, 결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연구협약·연구비 정산 관리 매뉴얼

9 연구협약·연구비 정산 관리 매뉴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 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의 협약·정산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Ⅰ 연구협약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1.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3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약(이하 "연구개발과제협약"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관행적 연차협약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 연차평가·정산에서 단계별 평가·정산 원칙으로 전환
-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단가·수량 중심의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
  ※ 단, 연구시설·장비비 및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등 일부 항목 제외
  -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의 이월 및 선집행을 허용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것임

나. 협약 체결 원칙

- **(협약체결 단위)** 해당 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최초 과제 선정 단계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차협약·평가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단계(다년도)평가 결과에 따라 협약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는 연구개발과제가 중단(해약)될 수 있음
- **(협약의 당사자)**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이 부처·전문기관과의 협약 당사자이며, 연구자는 협약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사업단의 경우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장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 전문기관은 부처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자격으로서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
  - 주관연구개발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도 부처(전문기관)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이 부처·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

- **(협약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함

- **(협약체결 명의)** 표준 협약서식 내 각 협약의 당사자(부처·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가 협약내용을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
  -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부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단 명의로 부처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

- **(협약 체결 절차)**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전자협약 체결 시 부처·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협약 체결 및 필요서류 안내, 협약서 발송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인편의 방법 등으로 안내·발송이 가능하며,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송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취소를 할 수 있음

(협약서 보관) 전자문서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장의 개별 협약서 열람이 상시 가능하도록 제공해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협약을 진행한 경우, 협약이 완료된 개별 협약서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발송하여 상호 보관하여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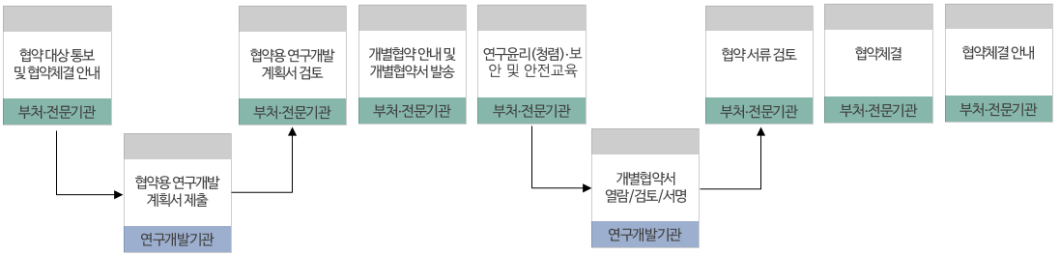

[그림 1-1] 협약 체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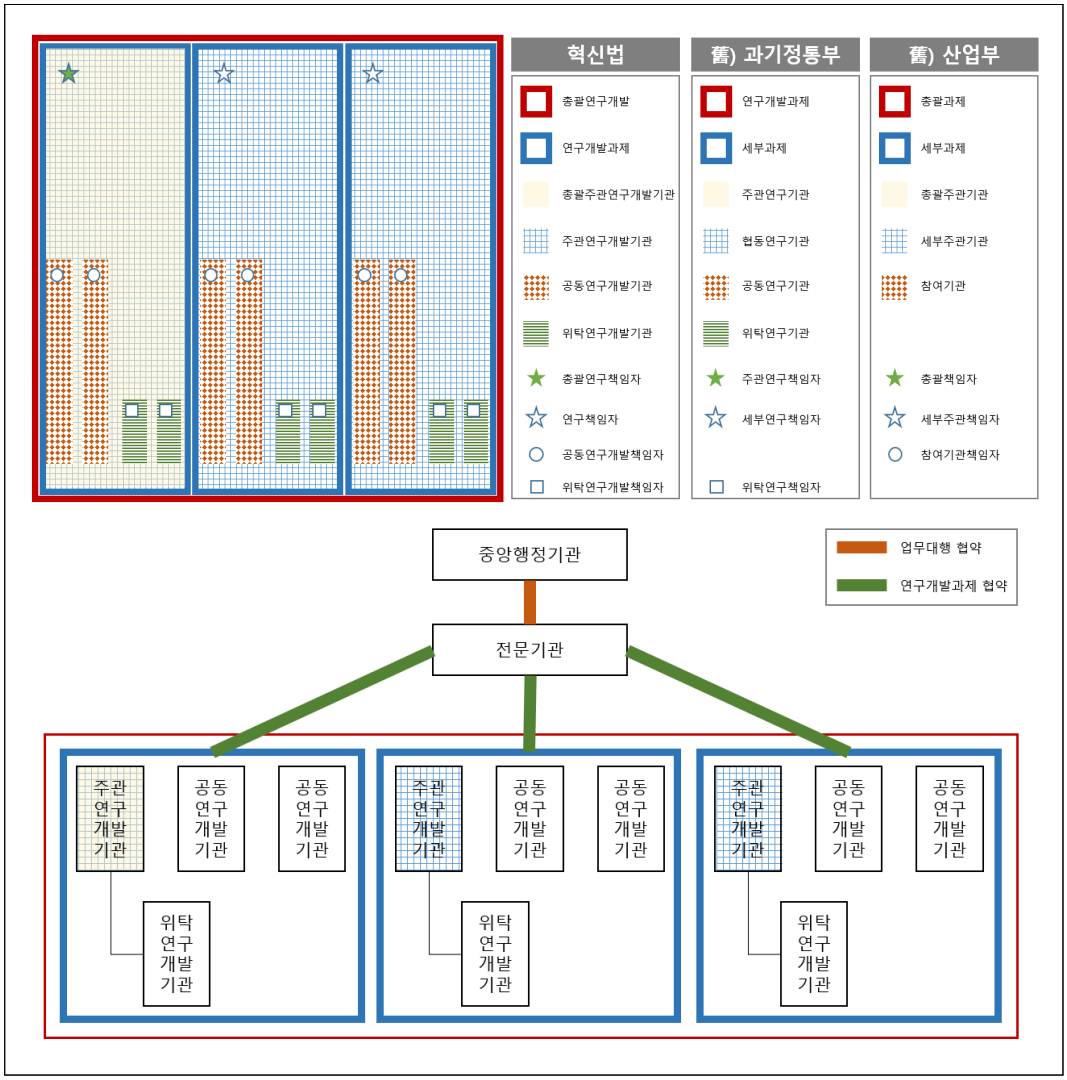

[그림 1-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라. 협약 체결의 내용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처·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쌍방 의사합치에 의해 협약을 체결

❶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란 세부항목*별 수량과 단가를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세부항목별 총액만 개괄적으로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을 의미

  *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재료비 등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항목

  ※ 단, 연구시설·장비비 및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는 제외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연구자)는 협약의 내용대로 성실히 쌍방에 대한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음

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마. 표준 협약 서식

- 연구개발과제의 표준 협약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와 '협약의 세부조건(예시)'로 구성하여 정하고 있음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❶ (과제 협약서) 협약의 당사자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최초 협약 이후,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변경·추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협약의 변경 필요

❷ (협약의 세부조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의무를 정하도록 함

- 「별지 제2호」 서식의 별첨을 예시로 활용하여, 혁신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시에는 연구개발계획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관련

❶ **(계획서 표지)** 제출인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을 모두 명시 필요
❷ **(본문1)**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❸ **(본문2)**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구성을 변경하거나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 이전까지 변경·추가 활용이 가능함
❹ **(별첨: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를 두고 추진·관리될 경우에 작성
- 상위의 동일한 연구개발 목표에 따라 추진되는 각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총괄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협약체결 단위	(계속과제의) 연차협약	전체 연구개발기간
협약 당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협약 체결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2.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및 해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①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게 되어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1조(특별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중단을 요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에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규정의 취지

- 협약의 당사자로서 상호간 협의를 통한 협약변경을 강조
-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변경은 당사자 간 통보를 통하여 변경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해소
- 협약 변경 절차로서 '상호간 문서를 통한 사전 협의' 또는 '특별평가'를 명시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 승인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1〉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모두 해당
연구책임자의 변경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 ※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2호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목표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모두 해당
연구개발비의 변경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간접비 고시 비율 내)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및 제74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4조(사전 승인 절차)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다. 경미한 협약의 변경 (실무 상 통보사항)

-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①~⑤)이나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⑥, ⑦)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만으로도 협약이 변경됨
  - 이는 협약 변경 시마다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경감하기 위함임

통보만으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①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②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의 변경
③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은 제외)
④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의 변경

〈 부처·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

⑥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하는 경우
⑦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

〈표 1-2〉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관련 법령
기관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개발기관 외 변경	④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기관정보 변경	⑤ 연구개발기관 정보변경 (기관명칭, 기관장 등)	통보	영 제14조제3항제4호
인력 변경	연구책임자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③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자 (연구책임자 제외)	④ 연구자 변경 (연구책임자 제외)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2호
	연구자 외 변경	⑤ 연구지원인력 등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개발기관외 인력	⑥ 연구개발기관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인력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개발 목표 · 내용	연구개발 목표	① 최종 /단계 목표변경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② 성과 및 성능 목표	상호협의(승인)	법 제11조제2항
	연구개발 내용	① 추진전략, 방법 등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1호
		② 기술기여도	상호협의(승인)	영 제39조제2항

구분		세부 항목	승인/통보	관련 법령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① 연구개발비 총액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연구개발기관 부담금변경 (현금 /현물간 변경 포함)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인건비	①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위탁 연구개발비	①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국제공동연구비	① 계획대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시설 장비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보유현황 변경	통보	(현물과 연계)
		③ 설치·운영 장소변경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26조제2항
		② 연구수당 증액	불가	
	간접비	① 간접비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간접비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 변경	①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비 항목별 세부내역의 변경은 통보 없이 자율 변경 (단, 승인사항은 제외)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변경	①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예산의 변경	승인	(평가 시 활용)
	연구개발비 계좌	①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4호
연구기간	연구개발기간 변경	① 전체 /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상호협의 (승인)	법 제11조제2항

※ 협약변경의 상호 협의 사항은 실무 상 승인사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라. 협약 변경 절차

-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 부처·전문기관은 협약변경 처리된 사항을 포함한 협약 변경을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확인

마. 협약의 해약

- 부처·전문기관은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에 따라 중단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즉시 연구개발비 집행을 중지하고, 협약을 해약

- 협약 해약 이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함

-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26조를 준용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3.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에 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회수하지 않는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회수한 연구개발비를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바. 특별평가를 통한 과제의 변경 및 중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평가 요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변경(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의 변경 등) 및 과제 중단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❶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제보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2. 연구개발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증명자료의 위조·변조
   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해당하는 행위

❷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❸ 연구개발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의 협약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청을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환경 및 상황의 변경에 따라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협약 변경을 위한 특별평가를 부처·전문기관에 표준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표준으로 함

❺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평가 후속조치) 특별평가를 거쳐 결정된 협약의 변경 및 해약은 각각 '라. 협약 변경 절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협약의 해약은 '마. 협약의 해약'의 절차를 준용
  - 특별평가 결과 협약 변경 또는 과제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은 위반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에 시정 요구
  - 특별평가 결과 협약 변경 또는 과제중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부처·전문기관은 특별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수용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사.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협약의 당사자	협약변경의 '승인'	협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
협약변경 절차	협약변경의 승인/통보사항 기준 및 요구절차 부처별 상이	혁신법에 따른 통일된 기준 적용 경미한 사항은 통보로 갈음
협약 해약 사전절차	협약해약의 사전절차 부처별 상이	평가단에 의해 전문적인 평가(특별평가)를 거쳐 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이 가능

아. Q&A

Q1. 협약 체결 이후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참여시키려는 경우 그 절차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개발기관임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추가하려면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 협약을 변경해야 함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에 관한 협약의 변경을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이 전문기관에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함

Q2.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하며, 이 경우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는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포함됨
- 혁신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의 특성, 수행단계,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Q3. 연구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참여제한(혁신법 시행 이후 부정행위 발생)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연구자와 해당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혁신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지체 없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에서 참여를 제한해야 함
- 참여연구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특별평가 없이 해당 연구자를 수행하고 있는 과제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통보로 이루어질 수 있음

Q4.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됨에 따라, 다년도 과제를 연 단위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인지?

- 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 단위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단계를 연 단위로 하여 매년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한편, 단계를 연 단위로 구분하지 않더라도 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받거나 필요시 혁신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관련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연 단위로 과제의 진행 상황은 점검 할 수 있음

Q5.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차협약 및 연차평가가 폐지되었는데,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연차평가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1.1.1부터 시행되었음. 따라서, '21.1.1부터 시작하는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협약기간으로 하여 체결되어야 함
  - ▸ 만약, 이미 연차협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협약 변경이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평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가 종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었을 때 실시해야 하며, 연차평가제도는 폐지되었음. 따라서, 21.1.1 이후 연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참고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전 반드시 평가가 필요하다면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를 필요한 평가 주기에 맞게 구분하는 협약 변경을 통해 단계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음

Q6. 어떤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 변경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Q7. 혁신법 이전 협약 변경 시 승인 사항으로 관리하던 참여연구자(예: 핵심연구자)도 혁신법에 따라 통보 사항이 되는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연구책임자(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해석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도 포함)를 제외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변경은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봄
-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아닌 참여연구자의 변경은 협약 변경 시 통보사항임

Q8.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의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승인절차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말씀주신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등 승인사항은 제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등 협약변경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당사자 간 통보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 향후 IRIS(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면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통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임
- IRIS(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되기 전에는 한시적으로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에 변경되는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가 가능함

Ⅱ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제1절 연구개발비의 구성·지급·이관

가. 규정의 취지(공통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기관별 재원 구성과 지급 절차 및 방법, 연구개발기관 간의 연구개발비 이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함

나.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부담기준

-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
  - 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 ❶ 비영리기관: 원칙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단,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❷ 영리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할 수 있음

〈표 2-1〉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영 제19조제4항 외 과제	영 제19조제4항 해당 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	○	○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 (시행령 제19조)
  -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영 별표1)와 같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표 2-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❶ 비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❷ 영리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 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지원 또는 부담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가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제정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다.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 유형
- 일괄지급: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
- 건별지급: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별로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지급

◉ 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를 위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함.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방법을 정하여 통보* 하여야 함

*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보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수행기관 연구개발비 지급유형 현황'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❶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비영리기관에 대하여는 일괄지급(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기타 비영리기관은 건별지급)하고, 영리기관에 대하여는 건별지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은 일괄지급)함
  ※ 통합Ezbaro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과제는 건별지급 가능함
  ❷ 통합RCMS를 사용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건별지급함

〈표 2-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유형별 지급 방법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통합Ezbaro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일괄지급 • 연구지원부서가 없는 경우: 건별지급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인 경우: 일괄지급 • 공기업이 아닌 경우: 건별지급
	연간 연구개발비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건별지급 가능			
통합RCMS	건별지급			

- 연구개발비 납부 및 지급 대행(사용기준 제20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납부받는 업무와 지급하는 업무를 연구비관리전담기관으로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연구재단(통합Ezbaro 운영)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통합RCMS 운영)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비관리전담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라. 연구개발비 이관

-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개발기관이 타 연구개발기관·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함
  - 직접비: 직접비 잔액
  - 간접비
    ❶ 비영리기관: 직접비 사용비율 적용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사용 금액을 제외한 잔액*
    * 산출식: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간접비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❷ 영리기관: 간접비 잔액

〈표 2-4〉 연구개발비의 이관 방법

구분	비영리기관(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직접비	직접비 잔액	직접비 잔액
간접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함) 간접비총액*-(이미 사용한 연구개발과제 수정직접비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 비율) * 간접비 총액은 연구개발비 이관시점까지 수령한 간접비금액을 말함	간접비 잔액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담 단위	• 연구개발과제별 부담	• 연구개발기관별 부담
중견기업	• 60% 이내 정부지원	• 70% 이내 정부지원
공기업	• 별도 명시되지 않음	• 50% 이내 정부지원
특례 설정	• 과기정통부 사전협의 필요	• 긴급한 경우 사후통보 허용
현물부담	•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에 한정 • 세목별 최대 비율을 한정	• (좌동) • 항목별 최대 비율 삭제

바. Q&A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계속과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혁신법 및 하위규정 제정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아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의 최대값이 상향조정된 것임
- 종전의 공동관리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은 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반드시 조정할 필요는 없음
- 다만, 부처와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를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음

Q2.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각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연구개발기관별로, 그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총액): 10억원
  - A기관(대 기 업): 5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5억까지 A기관에 지원)
  - B기관(중견기업): 3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2.1억까지 B기관에 지원)
  - C기관(중소기업): 2억원 수행(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1.5억까지 C기관에 지원)

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비 부담이 과도한 경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 협약에서 정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으며, 부처(전문기관)와 협의(승인) 하에 협약 변경 필요
- 부처가 시행령 별표 1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구개발비 지원을 하려는 경우 부처는 과기정통부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사후통보하여야 함

Q5.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Q6.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중소·중견·대기업)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기관의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도 연구개발비의 부담비율은 협약 체결 당시 정한 비율을 따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음

Q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다른 기관·단체로 이관할 경우 간접비 적용 방법은?

- 연구개발비를 이관하는 비영리기관은 수정직접비 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사용금액를 정산하고, 이관받는 기관은 이관받은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이관시점*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를 산출함
  * 이관시점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변경 승인일자 또는 양도양수 시 정함

〈간접비고시비율에 따른 간접비 조정방법(예시)〉

- 이관하는 기관 인정 간접비(A)
  = 직접비 사용금액 × 간접비 고시비율
- 이관받는 기관 인정 간접비(B)
  = (협약시점 직접비 − A기관 직접비 사용금액) × B기관 간접비고시비율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직접비로 전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접비 증액 승인 불필요
- A + B 〉 협약시점의 간접비: 협약시점의 간접비로 인정.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사전 승인사항)

- (이관하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낮을 경우) 이관시점에 이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간접비비율로 적용 후, 남은 금액은 직접비로 전용
- (이관받는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을 경우) 사용기준 제36조에 따라 산출된 간접비 잔액을 이관하는 것이 원칙. 단, 사용기준 제73조에 따라 간접비고시비율 내 증액 가능(사전 승인사항)

Q8. 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는 것을 연구개발기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별표1]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하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제2절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가. 규정취지

- 연구개발비 항목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소관하는 부처별로 별도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연구개발비를 합리적으로 계상하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

나.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 직접비 및 간접비 계상기준
  -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타 사업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 환급 가능한 세금,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연구개발기관 내부 거래(①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거래 포함/②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거래 포함),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동일과제** 참여 연구개발기관 간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없음

    *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계상 또는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직접비와 간접비에 중복계상 등

    ** 총괄 연구개발과제 내에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 연구개발과제를 제외한 개별 연구개발과제를 말함

    - 단, 대학이 기관 내 별도의 사업자(대학이 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함)가 운영하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비영리기관이 기관 내 공동 연구시설·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앙물품창고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 출연연의 본원과 분원간의 거래 비용은 계상할 수 있음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현금·현물 계상기준

- 비영리기관
  - 연구개발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에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영리기관

❶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현물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는 사용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❷ 부담하여야 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사용용도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할 수 있음

❸ 간접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5〉 연구개발비 항목별 직접비 내 현물 포함 여부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內 현물 포함 여부
연구활동비 內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직접비 40%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O
연구수당	수정인건비 20%이내 (인건비(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포함)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1항)	O

연구개발비 항목	제한기준	직접비 內 현물 포함 여부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40%이내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1항)	O
간접비	수정직접비 × 간접비 고시비율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조제9호)	X
연구수당 불인정	직접비 사용비율 20%초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6항)	X
간접비 불인정	직접비 집행비율 50%이하 시 집행비율을 초과한 금액 (시행령 제26조제5항제3호)	X

다. 연구개발비 공통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사용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라.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은 사용기준 [별표1]을 따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7]을 따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학술단체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사용기준 [별표8]을 따름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영 [별표3]을 따르고, 연구개발비 계상기준과 인정기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마.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검수강화	• 자체 구매 및 검수의무 미존재(비영리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원칙만 존재) (공동관리규정 제12조 제6항)	•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 포함) 구매할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 및 검수 의무 〈사용기준 제22조제3항〉
연구개발비 사용기간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연차)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 (연차 종료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 (원칙)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 또는 최종) • (예외) 사용실적보고서 보고일까지(단계 또는 최종종료후 3개월 이내) 일부 사항에 한해 사용가능 〈사용기준 제22조제4항〉

바. Q&A

Q1.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구매할 수 있는지?

-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세부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항목(舊 세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또는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물품에 한하여 구매 가능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협약용)에 명시하고,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함
- 한편,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자율성이 높아진 것에 걸맞게 책임성을 가지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무관하거나 과도한 연구개발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Q2.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인건비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 출연연 등 공동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사용기준 제39조) 및 산업기술혁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연 단위(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계상률 =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제2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월) 급여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 제3항에 따른 연(월) 급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급여 총액이며,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연구개발계획서 양식 상 인건비 항목에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인건비계상률 시스템 입력기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
- 인건비 구성항목

❶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❷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표 2-6〉 인건비 관련 법령 및 규정

구 분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연구참여자가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하며, 영리기관은 계상불가

-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표 2-7〉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
	불가능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인건비 계상한도

〈표 2-8〉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인건비 계상한도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3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연 단위 100% 이하	월 단위 100% 이하	-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① 인건비계상률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②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③ 학생인건비지급률(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해당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④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개발비 포함)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 급여(사용기준 제39조제3항)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 및 기타비영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제외)의 장은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 인력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매년 계상한 인건비의 합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과 그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표 2-9〉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1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130%	0%	130%
지급	100%	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 계상률(0%)을 초과하여 불가)		

〈표 2-10〉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사례2

구분	수탁사업	기본사업	합계
계상	60%	70%	130%
지급	60%	40%	100%
판단	130%(계상)-100%(지급) = 30% 초과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130%)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100%)의 차액(30%)이 기본사업 출연금인건비 계상률(70%) 미만으로 가능)		

- 계상된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의 과제별 인건비 계상률을 관리하여야 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간 동안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분할, 교차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담조직에 소속된 직원을 연구부서*로 인사명령에 의해 전출, 파견하는 경우,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에서 계상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직접비에서도 계상 및 사용은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
  * 대학: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
  * 대학을 제외한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전담조직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실, 전문연구소(센터) 등
- 직접비 중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음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2-11〉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구 분	증 명 자 료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용어정의 변경	• 인건비 계상비율 및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참여율	• 인건비 계상비율 ⇒ 총인건비계상률 * 인건비 지급 및 연구수당 계상 용도만 활용 〈사용기준 제39조제1항〉
연구근접지원인력 용어정의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직접비 중 인건비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용어없음)	• 연구근접지원인력(정의는 기존과 동일)
인건비계상률 산출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별도 지급
계상률 관리 단위	• 별도없음(불명확)	• 정부출연기관(전문기술생산연 포함): 1년간의 급여 총액 단위 • 그 외 기관: 월급여 총액 단위
계상률 입력주기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매월 입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1회 입력
인건비계상률 130% 허용기관 (정부출연(연)등)	•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나, 대상기관은 불명확(근거법령 미비)	• (대상기관) 사용기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기존보다 적용대상기관 확대)

구분	종전	혁신법
	• (참여율) 미지급인건비 포함여부 불명확(특정(연)의 4대과기원만 가능) * 기본사업의 참여율을 미포함하는 경우 있음	• (계상률) 총인건비계상률 도입(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하여 130%이내(출연연 기본사업의 인건비계상률 포함)
참여율 100%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참여율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130%)일 경우, 과제 참여불가(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에 0% 입력불가(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만 가능) ※ 참여율 0%는 과제참여불가 해석	• (참여)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 등 130%)일 경우, 과제 참여가능(3책5공 준수) • (입력) 통합이지바로 적용사업은 인건비 계상률이 0%인 경우에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에 반드시 0%입력, 통합RCMS 적용사업은 전문기관 과제관리시스템 정보와 연계되어 통합RCMS 시스템에 자동입력됨
현금지급 가능 (영리기관)	• 지식서비스 분야 과제 수행하는 중소기업 연구자 인건비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자 인건비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인건비 • 그 밖에 부처가 인정하는 경우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소속 연구자 -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소유의 경우(과기정통부 해당)	〈공통사항〉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참여연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의 경우 • 중소·중견기업·대기업의 기존인력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지급최대비율 (영리기관)	〈신설〉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내 계상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가능
신규채용 인건비관리 (영리기관)	〈신설〉	•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시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계획'(사용기준 별지2호서식) 관리 필요 〈사용기준 제65조제6항〉

마. Q&A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Q2.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에서 지급 불가
-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인건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전에 계획 및 반영하여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등)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Q3.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인지?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현금, 현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참여연구자가 있을 경우 연구수당 계상 시 이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임

Q4.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8조·제57조에 따라, 비영리기관은 별도 계정을 운영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는 참여연구자별·연구개발과제별로 구분·관리되어야 함

Q5.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이외의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100% 확보된 경우에는 정부수탁사업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민간재원으로 전액 확보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 계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인건비 계상이 가능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인건비가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소관 부처에서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Q6. 영리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여부 및 계상 가능 기간은?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연구개발과제 공고일-6개월'까지 채용한 경우 포함)은 부처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현금 계상 가능
- 그 밖의 경우, 해당 내용을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부처의 인정을 받아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시점까지 현금계상 가능

Q7. 기존에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영리기관은 어떤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신규인력은 부처(전문기관)의 별도 인정 없이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21.1.1. 이전에 체결한 협약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해당 협약의 종료시까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현금계상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필요

Q8.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급할 수 없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함
  ※ 중소·중견기업 신규인력은 별도 인정이 필요하지 않음
- 동 규정은 과제를 소관하는 부처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건비 현금지급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관에 대하여 인건비 현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함

Q9. 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5항에 따라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 금액은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이하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이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Q10.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직장 가입자가 아닌 강사는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Q11. 연구개발기관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여연구자 B의 2021년 6월달 급여총액이 10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20만원일 경우에, C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4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제외)과 20만원(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각 계상하였을 경우에 총인건비계상률은?

종전(참여율)	현행(총인건비계상률)
$\frac{60}{120} = 50\%$	$\frac{40}{100} = 40\%$ * 4대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0만원은 총인건비계상률과 별도로 인건비에서 계상

Q12.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원 연봉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제4절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14.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7조(학생인건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인건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이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법 제2조제3호나목의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대학등 또는 외국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또는 외국대학 소속의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나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사용기준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 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의 경우 변경 가능
  - ※ 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하되, 비통합관리기관은 지급액·계상률 기재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칸을 삭제하여 활용, 서명란은 '학생연구자, 연구책임자, 기관장' 제3자로 수정하여 서명(본절 바. 참고)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보장, 처우개선,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운영·공개**

- 수료생 연구등록제도가 없는 기관(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수료자의 등록에 준하는 사항을 대학의 학칙이나 학적시스템, 자체 학적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의 소속임이 증명 가능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2-12〉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외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 필요, 정부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 필요,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타 재원으로 발생한 소득 고려 필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필요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계상률만 고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불필요*
	〈신 설〉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계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여 계상

구분	종전	혁신법
		※ 해당 학생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학생인건비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
연구참여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 양자 간 협약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계정책임자) ↔ 기관장 3자 간 협약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월 단위	확약체결 단위 - (통합관리기관) 학기 또는 학년 단위 - (통합관리기관 외)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신 설〉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필요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박사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 지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사항은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직장인 학생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장려하는 것이 아님. 기관 자체 규정에서 직장인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을 제한할 수 있음. 아울러, 전일제 학생은 반드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 참여가 가능하나, 직장인 학생은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 참여 가능. 특히, 전일제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직장인 학생의 학생인건비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직장인 학생에게 지급할 학생인건비는 기존 전일제 학생을 위한 학생인건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여 지급하길 권고함

마. Q&A

Q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 등에게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전일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추가 확보 노력,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액 제한 등)

Q2.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

Q3.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시한은?

-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 지급률과 연구참여기간은 별개임. 일할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Q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4호에 따르면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도 학생연구자에 해당함. 다만, 별도의 연구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학교는 각 학교의 자체 인정 기준(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 등록한 과정생 등)에 따라 연구생으로 보고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유사한 제도로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볼 수 있으며 학생연구자로서 연구 참여 및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Q5.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 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Q6.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즉,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

Q7. 군사훈련 기간 동안에도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 혁신법과 그 하위규정에서는 군사훈련 기간 동안의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이 경우, 해당 월에 일할계산 없이 연구참여확약서에 기재한 지급액만큼 모두 지급할 수 있음
  ※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Q8. 대학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한지? 정부출연기관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시 유의할 점은?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에서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고시 제39조제10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원 소속 대학에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예정인 금액을 통보해야 함. 원 소속대학과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각각 기관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예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25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인건비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150만 원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100만 원까지 추가 설정 가능함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고시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시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통보하여 원 소속 대학에서도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Q9.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타 학교 학생연구자는 인건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양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관련)

※ 연구개발기관장(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의 경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 대체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마.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다. 담당업무(역할):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마.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연구책임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서명 또는 인)

제5절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나.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 자산등록가: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임차료는 사용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❶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❷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❸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❹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❶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❷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간접비 사용용도)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 비영리기관: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다.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표 2-13〉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장비도입기한	•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사용기준 제23조제5항〉

제6절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재료비 사용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까지 구매(검수완료)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음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공통사용기준 참조
- 영리기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다.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표 2-14〉 연구재료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재료비 구입기한	•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 (일부부처) 과제종료 2개월 전까지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제7절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영 제19조제4항제3호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사용할 수 없음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를 다음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여야 하나,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제외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함

❶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❷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함

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text{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❶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함
  - ❷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❸ 국외 출장비는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용할 수 있음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 ❶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 ❷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지원기관 표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된 논문게재료는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 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함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과제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❶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

  ❷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❹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❺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❻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 기관 유형별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 비영리기관

  ❶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표 2-15〉 비영리기관의 전문가 활용비 사례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대학의 경우 연구실)	O

❷ 소프트웨어 활용비의 경우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하거나, 기관 단위 소프트웨어 통합구매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음

- 영리기관

❶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❷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는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❸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음
-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표 2-16〉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증 명 자 료</th></tr>
<tr><td>지식재산
창출활동비</td><td colspan="2">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td></tr>
<tr><td rowspan="3">외부
전문기술
활용비</td><td colspan="2">기술도입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td></tr>
<tr><td colspan="2">전문가활용비</td><td>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td></tr>
<tr><td colspan="2">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td></tr>
<tr><td rowspan="3">회의비</td><td colspan="2">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td><td>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r><td colspan="2">회의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r><td colspan="2">회의·세미나 개최비</td><td>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r><td rowspan="2">출장비</td><td rowspan="2">국내</td><td>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td><td>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r><td>여비지급
내부기준
없는 경우</td><td>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td></tr>
</table>

구 분	증 명 자 료		
	국외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⑥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자체규정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구 분	증 명 자 료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인력 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 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사용한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 기술활용,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 과제종료(연차) 전까지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 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기한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개인용PC는 비영리기관만 허용)	•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 단, 영리기관은 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연구 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만 계상가능
연구실 운영 위한 소모성경비	• (계상) 비영리기관만 계상가능 • (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 (계상) 정부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영리 기관 계상불가) • (대상) 연구실운영비는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자체규정 마련필요)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사용조건	• 별도 없음.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에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사용기준 별지3호 서식)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 사용 가능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계상 불가
기술도입비 현물계상한도 (영리기관)	• 별도없음	• 실제기술도입비용의 50% 이내 계상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
연구활동비 정산 면제	• 연구활동비(사용용도 제7호(회의비, 식대 등)에 한함)가 직접비의 5% 이내일 경우 전문기관의 정산 면제	〈삭제〉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학회연회비 인정기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 연회비 인정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한 학회연회비(1년) 인정

마. Q&A

Q1.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기관·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사용할 수 있음

Q2.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Q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 제1호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은 연구개발기관 간 협동연구를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Q6. 비영리기관은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지?

- 비영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모아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관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고, 연구개발과제별로 분담하는 비용이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함

Q7.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Q8.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Q9.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제8절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하되,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학생인건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의 합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또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용기준 제26조제3항에 따른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연구수당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할 수 없음
- 미지급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이하 "미지급인건비

계상률"이라 함)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함

-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중 참여연구자 전부(일부기간 참여자, 중도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 다음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음

❶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

❷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함)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text{ 연구수당 지급액} \times \left(\text{연구수당지급비율} - \text{직접비사용비율} - \frac{20}{100}\right)$$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전단계이월금 포함)

$$② \text{ 연구수당지급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사용금액}}{\text{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기관 유형별 연구수당 사용기준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 연구수당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음
-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표 2-17〉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수당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부당집행 회수기준	•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삭제〉
정부출연연 계상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의 미지급 인건비도 연구수당 계상 가능

마. Q&A

Q1.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지?

- 연구개발과제에서 계상할 수 있는 연구수당(최대액)은 해당 과제의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의 20%를 넘을 수 없음
- 연구수당 계상금액 대비 실제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율은 '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 참여연구자가 복수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의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사용액'의 70%까지임

Q2.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총액 중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을 7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5항은 연구수당이 특정연구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연구수당을 개인별로 70%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Q3.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4.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Q5.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 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

Q7.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Q8.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100%이므로, 지급이 불가함. 단,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말함)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에만 지급 가능함

제9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함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로 설정·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개발과제계정"이라 함)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계상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함

다.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표 2-18〉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위탁연구개발비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 정의	• 주관연구기관의 위탁연구개발비 집행금액의 정의가 불명확 - 주관기관의 집행금액 또는 위탁기관의 실집행금액	•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금액의 정의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3항〉
정산 및 회수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아님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불가	• (정산) 전문기관의 정산 대상 • (회수) 전문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잔액 등 직접 회수 가능

제10절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용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사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연구개발부담비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영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연구개발부담비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

개발비로 봄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부담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함
-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따라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는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다.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표 2-19〉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신설〉	• 정부출연기관(기본사업만 해당)만 계상가능
연구개발부담비	• 〈신설〉	• 정부출연기관(영 제19조제4항 각호)만 계상가능 • 기본사업 중 연구과제협약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제11절 간접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가. 사용용도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함)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사업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홍보전문가 양성
    -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 연구지원비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참여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함
  - 연구활동지원금은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음
- 성과활용지원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할 수 있음

-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사용기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정부출연기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
    - 대학의 장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음
    - 별도 계정을 설치한 대학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다만, 단계평가 및 특별평가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 계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 산학협력단 회계를 운영하는 대학은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학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대학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대학의 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함

● 기관 유형별 간접비 적용기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은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안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비율을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비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① 대학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
    ②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인프라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정보시스템 구축·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⑤ 연구개발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의 예산 사정 등으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그 간접비비율 적용 방법을 알려야 함

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수정직접비 - 수정직접비 중 수정직접비에 비례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금액)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 수정직접비

② 비영리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에 1.0이하의 조정비율을 적용(직접비 규모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로 차별적인 조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방법

③ 간접비비율을 5퍼센트로 하는 방법

- 영리기관
  - 영리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간접비비율은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당 영리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접비비율의 조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 조정된 경우에도 협약 체결 당시 정해진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간접비비율을 협약 체결 당시의 간접비비율보다 낮게 정하고자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다.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표 2-20〉 간접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비영리기관	해당 없음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 협약체결시점(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체결시점 등)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간접비 증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처리규정 제25조제7항〉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 불명확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마. Q&A

Q1. 논문게재료는 직접비와 간접비 중 어느 항목으로 사용 가능한지?

- 연구개발기간 중에는 직접비 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에는 간접비에서 사용 가능함

Q2. 인력지원비 사용용도 중 '일시적 연구중단'의 범위는?

-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등을 말함

Q3.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간접비비율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목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알린 방법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시설·장비 구축,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영리기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단, 직접비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Q5.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모든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 직원 또한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한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Q6.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흡수하게될 경우 부당집행금액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임

제12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 시작일을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까지 앞당기고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시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의 사용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보는 근거 마련

나. 사용절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소속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받은 자 포함)의 발의를 거쳐야 함
  ❶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
  ❷ 연구재료비
  ❸ 연구활동비
  ❹ 연구수당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증명자료 포함)을 다음에서 정하는 기일까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❶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 다만,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그 밖에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후 1개월 이내까지 입력할 수 있음
  ❷ 건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

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

-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을 연구개발기관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의 사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함
-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❶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함)을 변경하려는 경우

❷ 연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변경(현금부담금액과 현물부담금액의 변경을 포함)하려는 경우

❸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

❹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❺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❻ 전체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❼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함. 단, 연구수당의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❶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❷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전 승인 절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 승인 여부를 사용계획 변경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한 기간을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비 사용의 상시점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 사용절차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도 운영가능)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7항〉	• 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운영 가능 (영리기관(공기업 제외)은 통합관리 불가) 〈시행령 제24조제4항〉
연구개발 시작일	〈신설〉	•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 날부터 협약 체결일 중 하루 〈사용기준 제71조제1항〉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시 자체재원 사용	〈신설〉 *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에 한해 적용	•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기관 자체재원 사용 가능 〈사용기준 제71조제2항〉
증명자료 보관기한	• 불명확(해당연도 종료일부터 또는 최종 연구 종료일부터 5년)	• 전체(단계) 종료일부터 5년
전자문서 보관대상	• 영수증서에 대하여만 전자적 보관 명시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9항〉	•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 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입력기한	• (일괄) 집행 후 5일 이내 • (건별) 사용내역 입력 후 집행 〈처리규정 제27조제1항〉	• 일괄 및 건별지급 연구과제의 상황별 별도 규정 〈사용기준 제70조제2항〉

구분	종전	혁신법
자체회계 감사 생략	• 연구개발비 총액이 5천만원 이하 과제의 경우 자체회계감사 생략가능 〈처리규정 제27조제3항〉	〈삭제〉

- 사전 승인

구분	종전	혁신법
사전승인사항	•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 〈신설〉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 〈신설〉 •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제외) • 신규 채용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 제1항〉 • 차년도 직접비를 당해연도에 사전집행하기 위한 간접비 비율 조정사항 〈처리규정 제18조제3항〉	• 전체(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 〈좌동〉 - 〈좌동〉 - 〈좌동〉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 내 자동이월) •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전체(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사전승인 통보기한	• 별도 통보기한 없음	• 15일 내 통보 (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기관에 사전 통보)
전문기관 보고사항	• 인건비의 20% 증액 • 참여연구자 변경(연구개발정보관리)	〈삭제〉
통보사항	• 별도 없음	•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시행령 제43조제3항〉

아. Q&A

Q1.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종료 이후 사용한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 등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 이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기한* 내에 사용내역을 입력하여야 함
  * 일괄지급: 사용일부터 5일 이내, 건별지급: 사용일 이전
- 또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에는 해당 연구개발비 사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사용실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Q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과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각각 무엇인가?

- 사전 승인 필요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로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방법,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의 변경, 연구개발비 사용의 개괄적 계획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 그밖에 별도로 협약으로 정한 경우 등을 말함
  ※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협약의 변경이므로, 협약 당사자가 모두 알 수 있게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음

Q3. 한 연구개발기관이 여러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변경이 사전 승인 사항에 해당하는지?

- 위탁연구개발비 관련 사전 승인 사항은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증액되었을 때를 의미함
- 따라서, 각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가 20% 이상 변경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전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Q4.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기관이 사전 승인한 경우에도 부처의 별도 사전 승인이 필요한지?

- 전문기관이 협약 변경(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포함) 업무에 대하여 부처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었다면 부처의 사전 승인을 대행한 것이므로 부처의 사전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음

Q5.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도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변경에 대하여 부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제13절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용도

가.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정부지원금이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이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 정부지원금이자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 (단계구분이 없으면 총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나.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정부지원금이자의 사용용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동안 정부지원금 이자를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이 경우 연구개발비 회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연구수당을 제외한 직접비 항목에 산입하여 사용함. 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연구수당에 산입가능)
  - 연구개발에 재투자
  -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산입(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에 한정됨)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한정됨)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 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이자 중 정부지원금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사용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이자: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결정

다. 전문기관 등의 이자 납입

- 전문기관(연구비관리전담기관 포함)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대행하면서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 또는 해당 기금에 납입하여야 함

라. Q&A

Q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 구분은?

-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서 각 연구개발비(정부지원, 민간부담 등)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이자를 비례배분하여 결정

Q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이자는?

- 연구개발기관의 재정에서 비롯된 이자이므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제14절 연구개발비 정산·회수 절차

가.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전액(정부지원금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한 이자 포함)

나.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및 방법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단계가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을 적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차별로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단,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른 등록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해당연도 종료일 이후 수정·보완은 가능함
- 정산 실시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함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단,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이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

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각각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자료에 더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에 필요한 정보·자료(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 관한 정보 및 연구개발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정보·자료의 정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문서의 출력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됨

다. 연구개발비 정산의 특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
  -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라. 연구개발비 회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통합관리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포함)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정부 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정부 지원금 지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현금으로 지원한 연구개발비)

※ 정부 지원금 지분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 단계(단계 구분이 없으면 총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에 위탁연구개발과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 정부 지원금 지분 계산 시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를 절사하고 첫째 자리까지만 활용
- 직접비 사용비율(직접비 사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물은 고려하지 아니 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d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dfrac{\text{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통합RCMS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공기업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사용하지 아니한 간접비와 사용용도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간접비를 더한 금액
-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
  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과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간접비 초과사용 금액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마. 정산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정산 이의신청(사용기준 별지 제6호서식)을 할 수 있음

〈표 2-21〉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정산 결과 (회수 금액) 통보	이의신청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1회에 한함)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수 금액 반납

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회수 유예 및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이 경우, 기준일은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최초로 통보한 날로 함)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납기한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한하여 정산 결과에 따른 회수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정의	• 별도없음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
정산주기	• 연차별 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단계정산 (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 (연차) 사용내역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확인서 • 〈신설〉	• 〈좌동〉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 제외	•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 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및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제출로 정산 대체 가능

구분	종전	혁신법
정산시점	〈신설〉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통한 상시 점검 가능
정산방법	•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저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원칙)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 부당집행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회수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회수금액 면제	• 회수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	〈삭제〉
정산 이의신청 최대가능 횟수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최대 1회에 한함 〈사용기준 제84조제1항〉
회수금액 반납기한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시스템 상 15일 이내)	•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 * 국가안보 및 긴급한 상황 발생시 시기 조정 가능
회수면제	• 없음	• 다른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 사업에 한해 면제
회수유예	• 별도로 정한 바 없음	• 부처(전문기관)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년 범위에서 연장·분할납부 가능 - 부도·폐업·파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영 악화의 경우 - 재난, 재해,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의 경우
정산이의 신청서 서식	〈신설〉	• 공통서식 마련 (사용기준 별지 제6호서식)
정부지분률, 직접비, 연구수당, 간접비 사용비율 등 산출	• 해당연도 단위	• 전체(단계)연구기간 단위

아. 경과조치 사례

- ’20년도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는 정산 대상, 사용 기준과 회수 기준은 종전 규정을 따름
  - 사례1: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표 2-22〉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1

<table>
<tr><th>사업연도</th><th>’18년</th><th>’19년</th><th>’20년
(1.1.~12.31.)</th><th>’21년
(1.1.~12.31.)</th><th>’22년</th></tr>
<tr><td>사용기준</td><td colspan="3" rowspan="3">종전규정
(연차정산)</td><td colspan="2" rowspan="3">혁신법 적용
(단계정산)</td></tr>
<tr><td>정산기준</td></tr>
<tr><td>회수기준</td></tr>
</table>

- 연구개발기간이 2020.6.1.~2021.2.28.와 같이 적용규정이 달라지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21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을 적용함
  - 정산 기준과 회수 기준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용 기준은 2020.6.1. ~ 2020.12.31.까지 사용한 비용은 종전 규정을 따르며 2021.1.1.부터 2021.2.28.까지 사용한 비용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름
  - 사례2: 1단계(’18~’22년, 5년) 연구과제의 당해연구기간이 2021.1.1이후에 종료된 계속과제의 경우

〈표 2-23〉 정산시 적용규정에 관한 사례2

<table>
<tr><th rowspan="2">사업연도</th><th rowspan="2">’18년</th><th rowspan="2">’19년</th><th rowspan="2">’20년
(1.1.~6.30.)</th><th colspan="2">’21년
(’20.7.1.~’21.6.30.)</th><th rowspan="2">’22년</th></tr>
<tr><th>’20.7.1.
~’20.12.31.</th><th>’21.1.1.
~’21.6.30.</th></tr>
<tr><td>사용기준</td><td colspan="3" rowspan="3">종전규정
(연차정산)</td><td>종전규정</td><td colspan="2">혁신법 적용</td></tr>
<tr><td>정산기준</td><td colspan="3" rowspan="2">혁신법 적용
(단계정산)</td></tr>
<tr><td>회수기준</td></tr>
</table>

자. Q&A

Q1.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언제인지?

- 연구개발비 사용일은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는 날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사용실적 보고 전에 연구개발과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금전이 이체되더라도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내부결제와 물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정당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Q2.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20.12.31. 이전이나, 실제 연구개발비 지급일은 '21.1.1. 이후인 경우에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이체 등 실제 지급일이 '21.1.1. 이후인 경우에도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20.12.31.까지 완료되었다면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부처별 규정을 적용함

Q3. 정산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는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단, ①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②연구지원체계평가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한 경우, ③자체정산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이 수행한 경우에는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Q4.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의 주기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즉,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는 단계별로 이루어지며, 이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입력과는 별개임

Q5. 직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차별 계산해야 하는지? 단계별 계산해야 하는지?

- 연구수당 지급비율, 직접비 사용(집행)비율, 간접비 사용비율 등은 연구개발비의 정산 기간에 부합하게,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해당 단계)별로 산출

Q6.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함이 원칙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2조 제4항 단서는 '외국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납부, 연구비카드 발급 전 연구개발비 사용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Q7.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회수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여야 함

제15절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년 마다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이하 "산출기준"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받으려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문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 ❶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사용기준 별지 제15호 서식)
  - ❷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는 연도의 직전 2개 회계연도 동안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대학의 경우에 사용기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와 사용기준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를 포함하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사용기준 별표 6과 같음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 및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가 정하는 의무산출기관으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각각

5퍼센트로 함

-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이 아닌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및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되어 평가를 받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퍼센트로 함
-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기업 포함)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0퍼센트로 함
- 연구개발기관이 통폐합 또는 분리되는 경우 통폐합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 중 어느 하나를, 분리된 연구개발기관은 이전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기초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보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할 때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간접비고시비율산출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함

라. Q&A

Q1. 연구지원체계평가와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의 관계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할 수 있음(신청일 기준 2년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때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을 결정
  * 간접비고시비율 산출기준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배포

Q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대해서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이 협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가R&D과제 수행의 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협약서 상 대가를 제공하는 과제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를 따르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을 안내할 때는 현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작성할 때 대가성(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여부)을 기준으로 회계적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인 경우에도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음
- 정리하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가 아닌,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여야 함

제16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가. 규정의 취지

- 「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통합정보시스템(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

나. 전/후 비교

- (이전) 부처별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대상을 달리 규정
- (변경)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관리
  * 연구개발혁신법 제3조 각 호의 사업은 제외

다. 주요내용

- (기능) 과제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비카드 사용, 계좌이체 내역을 연계받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관리
  • 연구개발기관에서 사용내역 관련 정보·증명자료를 입력·업로드
- (상시점검) 부처(전문기관) 소관 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상시점검 가능

라. 개요

-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과제의 연구개발비 지급, 사용, 정산 업무를 지원
- '19.9월, 과기정통부(Ezbaro)와 산업부(RCMS)로 이원화 통합 완료 및 서비스
  • 연구개발비 사용 관리항목 표준화·간소화(12개부처 526개 정보 → 330개 공통정보), 종이영수증 부담 감소, 하나의 연구비카드

〈표 2-24〉 연구비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구분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부처	구분	연구관리전문기관	소관부처
1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9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청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1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13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5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	1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15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16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17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마.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자	• 17개 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 • 부처별 연구비 집행항목 및 절차 상이 • 연구비 서비스 절차 상이 • 사용 용도별 연구비 입력항목 상이 • 관련 규정 상이 • 연구비 집행 안내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 부재	• 과기정통부 Ezbaro, 산업부 RCMS로 통합 • 연구개발비 항목과 절차 표준화 • 연구개발비 서비스 표준화 •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 입력항목 표준화 및 대폭 간소화 • 관련 규정 표준화 • 통합 홈페이지(GAIA) 구축 및 서비스 제공
부처· 전문기관	• 범부처 연구비 통계 부재 • 연구비 정보 공유 제한 • 부처별 연구비 집행정보 각각 관리 • 연구비 부정집행 사전예방 기능 부족	• 범부처 연구개발비 통계 제공 • 공유 정보·채널 확대 • 범부처 연구개발비 사용정보 통합관리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사전예방 기능 강화
운영효율화	• 연구현장 행정업무 부담 및 각 전문기관별 연간 유지보수 비용 과다	• 연구현장 행정업무처리 시간 단축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간 유지보수비 절감

제17절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특례

가. 규정의 취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마련(사용기준 제116조)

나. 사용용도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시행령 별표2(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름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시행령 별표3(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에 따름

다. 사용기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사용기준 별표7)
  - **공통기준**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하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불가

      * 기존에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는 인건비로 재분류되는 것이므로 항목 간 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의 취지는 연구 수행 중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아니므로 21.1.1. 이후 신규과제에서도 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자교 학생연구자를 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연구자로 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인건비로의 전용도 20% 전용 제한에서 제외)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에서 인건비에는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음
    -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한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른 직접비 항목으로 사용

      ① 참여연구자가 전임교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으로 임용된 경우

      ② 참여연구자가 「학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참여연구자 역할	사용방법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 사용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학생인건비 사용 특례(사용기준 제86조~제99조),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사용기준 제100조~111조)를 적용하지 않음
  *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사용 특례(사용기준 제86조~제99조) 적용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정한 바에 따름

- **인건비**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에 따라 계상(계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동안 실지급액으로 계상)
  -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급여(사용기준 제39조제3항에 따른 급여를 말함)의 전부(연구개발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함)를 계상하여야 함.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 계상불가
    * 다른 재원의 적용범위는 학술진흥법 적용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말함(예시. 참여연구자가 하나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계상할 경우, 다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인건비 계상 불가)
  -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계상 불가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다음의 금액 이내로 계상하여야 함: 학사과정(월 100만원), 석사과정(월 180만원), 박사과정(월 250만원)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다수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가능
    * 학생연구자가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사용기준 별표7) 범위 내에서 인건비로 계상가능
    * 학생연구자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 이외에 별도로 총인건비계상률 범위에서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음(사용기준 제40조 제4항)
    *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가 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또한, 원 소속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은 학생연구자가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인건비 계상 가능. 다만, 인건비는 다수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계상 불가능)

- 학생연구자가 취업하여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불가

-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장비(기기, 부수 기자재를 포함)는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1개월 전 자체규정에 따라 도입(검수)되어야 함

  * 기기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조제1호 및 별표1의1 내용 준용함

- **연구활동비**
  - 소프트웨어는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1개월 전 도입(검수)되어야 함
  -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연구활동비에 계상

- **연구수당**
  - 참여연구자 1인당 월 40만원 이내 계상.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사전에 알려야 함)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가 전임교원 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에는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사용할 수 있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사용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학술단체지원사업(사용기준 별표8)

- **공통기준**
  - 사용기준 별표8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용기준 별표7을 따름

- **연구활동비**
  - 학술대회지원사업: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장 임차료, 소프트웨어 활용비, 기타 경비를 계상 가능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 학술지지원사업: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윤리활동비*, 기타 경비*를 계상 가능

  * 연구윤리활동비 및 기타경비 중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는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사업에 한하여 계상 가능

  ※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실제 필요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학술진흥법 제7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규정을 따름

  ※ 직접비(인건비, 장학금,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성과 활용·확산 지원비, 그 밖의 사업운영 경비), 간접비로 구분

- **사용기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연구개발비를 사용·지원하는 사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혁신법 적용 주요사항(연구개발비 사용 및 정산 중심)

구분		학술지원사업 (학술진흥법)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산학연협력사업 (산학협력법 제38조제1항)
법		제9조~제12조, 제14조~제15조 적용제외가능(다른 법률에 정할 경우)		
시행령		• 주요적용: 제19조(연구개발비 지원부담), 제20조(사용용도 등), 제24조(연구개발비관리), 제25조(연국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26조(연구개발비 정산 등), 제42조(자료 등의 제공 요청), 제32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		
	별표1 (부담기준)	적용	적용	적용
	별표2 (사용용도)	적용	미적용	적용
	별표3 (사용용도특례)	미적용	적용	미적용

구분		학술지원사업 (학술진흥법)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학술진흥법 제7조 및 고등교육법 제7조)	산학연협력사업 (산학협력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서식중심)		별지제7호 적용(사용실적보고서)		
사용기준		제18조~제72조는 별표7,8따름	제18조~제72조는 중앙행정기관 별도정함	모두적용
	별표7,8 (계상 및 인정특례)	적용 (별표7,8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1~115조 따름)	미적용	미적용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공통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사용	• 별도 시스템사용 의무 없음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사용(법 제13조)
연구기간 외 사용	• 별도없음(과기분야 규정 준용)	• 연구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일부 사유 (보고서 발간 비용 등)에 한해 사용가능
연구비카드사용	• 별도 없음	• (원칙)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연구비카드 발급 전 법인카드 사용가능)
현금사용 가능한도	• 당초 직접비의 2% 이내 〈처리규정 제24조제2항〉	• 한도 삭제
항목 전용제한 (인건비)	• 당초 직접비(인건비(전문인건비+학생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 인건비로 전용가능 〈처리규정 제24조제5항〉	• 직접비 총액의 20% 범위 이내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가능 〈사용기준 별표7〉
항목 전용제한 (간접비)	•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 증액 가능 (중앙행정기관 사전승인사항)

• 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여부 불명확	• 인건비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계상 가능

• 학생인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 인건비 지급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가능	• 학사급 및 석사급연구원 계상불가 (인건비로 계상 가능)
연구기간 외 사용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간 사용가능	• 연구기간 종료 후 사용불가 (출연연 및 특정연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적용)

•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연구시설 장비 구입	• 금액과 무관하게 연구시설장비 계상가능	• 건당 3천만원 이상(부가세 등 포함) 연구시설 장비 구입 시 연구시설장비심의 대상 및 ZEUS 시스템 등록(과기분야와 동일 적용)

• 연구재료비 계상 및 사용기준: 특이사항 없음

•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음	• 외부기관 참석자 없이 계상불가
학회참가비 사용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불가	• 학회가입비 및 연회비 계상가능
논문게재료 사용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가능	•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집행 불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야근(특근) 식대	• 규정이 없음	• 집행가능
연구환경 유지비	• 계상불가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연구실운영 소모성경비	• 계상불가	• 계상가능(자체규정 마련 필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미계상시 집행불가	• 계상가능(도입기한 제한 없음)
외부전문 기술활용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집행한도 없음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포함),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직접비의 40% 이내 사용가능(과기분야와 동일적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사용가능 ※ (사용용도) 국외 소재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활용 및 협업연구위한 비용 포함
소프트웨어 활용비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은 회수)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단위일 경우, 연구기간 초과하더라도 계상가능
국외출장	•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 의무 없음	• 국외출장비 지급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보관 의무 있음

•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지급대상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만 지급대상자임 (학생연구자 제외)	• 학생연구자도 지급가능(단, 인건비 또는 학생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계상불가)
계상한도	• 1인당 월 40만원 이내 (별도의 계상기준을 정할 수 없음)	• 1인당 월 40만원 이내 (연구개발과제 공고시 사전에 알려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 특이사항 없음

• 간접비 계상 및 사용기준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간접비비율 적용시점	• 협약체결시점(당해연도별 적용, 단계별 협약 체결시점 등)	•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 시점
간접비 증액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불가 * 중소·중견기업으로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고시비율 내에서 증액가능(사전승인사항)
간접비 이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불가	• 간접비고시비율이 높은 기관으로 연구개발기관 변경 시 간접비 증액 가능(사전승인사항)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 (원칙) 5% • (예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은 10% 계상 가능	• (원칙) 10%
간접비 기관단위 관리	• 불명확	• (비영리기관) 통합관리가능 • (영리기관) 불가
사용제한	〈신설〉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사용불가
간접비 회수	〈신설〉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초과한 경우 회수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 승인사항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사전승인사항	•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 변경 • 〈신설〉 • 〈신설〉 • 직접비를 다음연도 이월(연구소지원사업 위주) • 〈신설〉	• 단계별 연구개발금액 총액 변경 • 연도별 정부지원 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변경 (현금 및 현물 변경 포함) •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계획변경 - 건당 3천만원 이상 원래계획없이 새로 집행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변경 구매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장비 구매취소 - 연구시설장비 구축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 장소에 설치운영 • 다음단계로 직접비(현물제외) 이월(단계내 자동 이월) • 영리기관이 현금 계상 인건비 변경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 〈신설〉 • 〈신설〉 •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 증액 • 단계별 간접비 총액 증액 시 〈사용기준 제73조〉 • 연구책임자가 임용 또는 취업시 인건비를 직접비 전용 〈사용기준 별표7〉
사전승인 통보기한	• 별도 통보기한 없음	• 15일 내 통보(기한 연장가능하나, 연장시 연구개발기관에 사전 통보)
통보사항	• 별도 없음	• 경미한 사항(통보만으로 협약변경) * 연구자변경,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등 *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 반영 〈시행령 제43조제3항〉

- 연구개발비 이자 사용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사용용도	• 과제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사용가능	• 해당 과제 산입사용, 연구개발재투자, 성과활용, 국고반납
승인사항	• 1천만원 이상 시 전문기관 승인	〈삭제〉

-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정산주기	• 연차정산 (연차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하였으나, 별도 양식 및 세부집행내역 없음)	• 단계정산(단계구분 없으면 총연구기간 정산) - (연차) 세부사용내역을 통합이지바로시스템에 입력 - (단계(최종))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정산 제출서류	〈신설〉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현물부담확인서 •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
정산대상	• 일부 과제 추출정산(5% 이상)	• 모든 과제 정산 - 단,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연구지원체계평가 우수기관, 자체정산 역량 보유기관에 대해서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정산

구분	기존(~'20년)	변경('21년~)
정산시점	〈신설〉	• 과제(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실시(착수)
상시점검	〈신설〉	• 통합이지바로시스템 접속을 통한 상시점검 가능
정산방법	• 증빙자료 중심 정산(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전자문서 및 전저화문서 출력 요구 가능	• (원칙) 통합이지바로시스템의 입력정보 및 자료를 사용한 온라인 정산 • (기타)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출력 요구 금지
부당집행 금액회수	• 부당사용금액 정의 불명확	•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용도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사용 기준 위반 금액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현재 별도 사용기준 제정 중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2021.2.1.제정)

마. Q&A

Q1.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도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을 변경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학술진흥법」이 적용됩니다.
-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❶연구개발비 항목, ❷항목별 연구개발비 규모, ❸사용기준, 제재처분 규정 등이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변경되어 협약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 ❶연구개발비 항목은 사실상 동일하고,
  - ❷항목별 연구개발비 규모는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협약서 상의 금액과 실제 사용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무관하므로 협약을 변경할 사항까지는 아닙니다.

    ※ 전문기관은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협약서 상의 항목별 연구개발비 규모와 실제 사용액이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 금액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해야 함
  - 또한, ❸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재처분 규정 등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은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며, 법령이 개정되면 협약에 우선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협약을 반드시 변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법령과 협약서에 동일한 사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기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불가피한 변경이 발생할 때, 함께 변경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Q2. 학술지원사업은 최종보고서 대신 원고를 작성·제출해 왔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및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혁신법」이 아닌 「학술진흥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종전과 같이 「학술진흥법」에 따라 원고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학생인건비와 인건비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Q4.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 가능**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기존에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 계상되었던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인건비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는 비목 간 전용이 아닙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이를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Q5.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학생연구자에게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만 학생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6. 학생연구자가 다른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다른 재원으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Q7.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타 대학이 수행하는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및 그 하위규정에서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인건비 기준 제2호의 급여에 학생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8.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학위과정 졸업자에게는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Q9.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지급하던 학생인건비를 인건비로 전용할 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에서 기존에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계상되었던 학생인건비는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른 인건비로 간주되는 것이며, 이는 비목 간 전용이 아닙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공통기준 2호에 따른 비목 간 전용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참고로, 이를 사유로 협약을 변경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Q10. 학사 또는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에 진학하기 전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가?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1에 따라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고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자는 학생연구자가 되며, 이들에게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Q11.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연구수당 지급 시, 동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에 따른 제한을 받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7 연구수당 부분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수당에 관한 기준을 모두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예를 들어, 참여연구자가 추가될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지급을 위해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자가 전임교원으로 임용될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연구수당으로 전용하기 위해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Q12.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2년까지 직접비에서 논문게재료 사용이 가능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논문게재료는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간접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한편, 논문게재료 관련하여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문사회와 이공 분야 모두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직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13.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인력만 참석하는 회의에서도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회의비 사용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이공 분야와 동일하게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인력이 1명 이상 참석하는 회의에서만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력에 대한 식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Q14.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이하로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비율을 정할 수 있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로만 적용해야 하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협약 당사자(부처(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자율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 이하로 간접비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Q15.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특정금액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정할 수 있었는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특정금액으로 간접비를 정할 수 없나요?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협약 당사자(부처(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자율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의 범위 내에서 특정금액으로 간접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Q16. 인문사회 분야는 연구노트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연구노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에 따라 협약 당사자(부처(또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가 인문사회 분야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학술진흥법」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원고 등으로 볼 수 있는 바, 원고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과기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주요 차이점

〈표 2-25〉 과학기술(이공) 분야와 인문사회분야 연구개발비 기준 차이점

구분	과학기술(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항목 전용제한	•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없음	• 직접비 내 항목간 전용제한 있음 인건비↔직접비(인건비 제외 항목))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가능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 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 지급불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지정기관) - 연구기간 종료후 학생인건비 지급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불가 - 연구기간 종료후 학생인건비 지급불가 단, 특정(연) 및 정부출연(연)은 적용가능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특례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적용(지정기관)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 불가
인건비 지급단가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정한 급여기준 (기준이 없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인건비 계상	• 최대 총인건비계상률 범위 내에서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 계상가능	• 하나의 학술지원사업에서 모든 인건비를 계상해야함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월 100만원 이상 • 석사과정: 월 180만원 이상 •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상 • 통합과정: 상기 지급기준 고려 별도정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월 100만원 이내 • 석사과정: 월 180만원 이내 • 박사과정: 월 250만원 이내
연구시설 장비 도입기한	• (원칙) 전체(단계)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종료(단계) 1개월 전까지 • (장비구축과제) 최종종료(단계) 전까지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전체(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소프트웨어 도입기한	• (원칙)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종료(단계)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종료(단계) 전까지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기간 초과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최소단위를 입증시 계상가능	• 전체(단계) 종료 1개월 전까지

구분	과학기술(이공)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수당 계상기준	•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 인건비(현물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제외),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 기여도 평가 후 지급	• (원칙) 참여연구자 1인당 월 40만원 이내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특성 고려하여 계상기준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여도 평가없이 정액지급 가능
연구수당 지급대상자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도 연구수당 지급가능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는 연구수당 지급불가(인건비 및 학생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중복 수혜 불가)
연구수당 회수	•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 초과금액 회수	미적용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 초과한 경우 회수	미적용

제18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및 제86조부터 제99조(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을 통합)

가. 규정의 취지

-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를 마련

- **통합관리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 지급의 **자율성**을 제고함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
  ※ 총 61개 기관 지정·운영(59개 대학·특정연, 2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0-780호('20.12.29.))

나.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고, 과제 종료 후에도 계정에 적립한 잔액을 계속 사용**
  -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 계상 금지
  -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필수
  - 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것을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간주
  - 신규 또는 후속 과제를 준비 중인 학생연구자에도 지급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도 계속 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

- 통합관리계정은 **연구개발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 단위와 연구책임자 단위로 설정**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는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으로는 차등지급
  - 연구책임자계정으로는 매월 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는 매월 지급하거나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일괄 선지급 가능

-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대학·정부출연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전산시스템 구축**(「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2 충족 필요) 후 신규 지정 신청
  - 과기정통부는 매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완료보고서·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요건 충족 시 지정통보
    ※ '19.9월 이후부터는 연구개발기관단위 통합관리기관으로만 지정 가능

-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이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의 2% 초과 또는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60% 미만이 2회 발생**했을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회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 자세한 사항은 **별권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참고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회 ※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최근 5년간 부당회수 비율 2% 이상 1회	〈좌 동〉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신 설〉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정보공개	〈신 설〉	학생인건비 지급, 부당회수 현황 공개
연구참여 확약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 양자 확약	학생연구자-계정책임자-통합관리기관장 3자 확약
소속변경 시 잔액이관	계정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과제별 잔여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금액 산출	계정잔액이 과제별로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에 따라 산출한 이관금액보다 적을 경우,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 기간 비율에 따라 이관 금액 산출
과제중단 시 잔액사용	〈신 설〉	기관 내 기관계정으로 이관 또는 부처 반납
자체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고시 별지 제8조서식(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실시

라. Q&A

Q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가 참여하던 과제가 종료된 경우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시까지 지급 가능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도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Q2.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휴직 중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만약,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관의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한 뒤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타 연구책임자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Q3.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반드시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 중에 학생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에 학생연구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연구자로 등록하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19절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사용하여야 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④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사용 기준
3.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별 집행 절차

가. 규정의 취지

-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주요사항 명시

나. 주요내용

-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①연구기관, ②공동활용시설, ③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 지정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內 장비운영비를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
    *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그림 2-1]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 근거법이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0조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며,
  - 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1.1제정)'으로 통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으로 규정이 통합되면서 제도 일부 사항 개정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기관의 내부 운영규정 마련 의무화(제102조)
  - R&D재원으로 구축된 장비뿐만 아니라 비R&D재원 장비도 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통합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제105조)
  - 통합관리비는 최초 설정이후 변경이 불가하나, 다년도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과제비 지급전까지 통합관리비의 변경을 허용(제103조) 등

다. 혁신법 전·후 비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비 사용 특례 근거 (연구시설 장비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8항 4호 및 제12조의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4항 4호 시행령 제20조 4항 2호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세부내용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세부 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 (과기정통부 고시)

라. Q&A

Q1.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통합관리비 적립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수정직접비의 10%이내에서 통합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정부수탁사업은 전문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통합관리비가 확정됨(기본사업의 경우 한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확정된 통합관리비를 적립하면 됨

Q2.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지출이 가능한 비R&D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 비R&D 재원으로 구축된 장비의 경우, ZEUS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연구개발계획서에 현물로 계상되거나 활용계획이 명시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활용되었음이 확인되는 장비에 한하여 통합연구시설장비비의 지출이 가능함

Q3. 연구기관 및 각 단위에서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초과분을 처리하게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3조 제1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에는 유형별 적립한도(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10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 7억 원, 연구책임자 단위 3억 원)를 초과하여 적립할 수 없음
- 따라서 각 연구개발기관 담당자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협약이 이뤄지기 전에 적립하고자 하는 계정의 적립한도를 먼저 확인한 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하여야 함
- 참고로,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지급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필요 및 용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내 여러 계정에 분할하여 적립할 수 있음
- 만약에 전문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이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려는 시점에 부득이하게 적립한도 초과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연구책임자의 판단 하에 적절한 타 유형 계정(소속된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에 적립할 수 있음

2021년 혁신법을 반영한 알기쉬운 연구비 사용관리 매뉴얼

- 저 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R&D평가지원단 R&D사업지원팀
  박정선, 나지희, 신선하, 이미란, 이신복, 이유선
- 발행일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인 : 권 순 만
- 발행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문의처 : R&D진흥본부 R&D평가지원단 R&D사업지원팀 043-713-8760~8765

* 이 책의 내용은 관련 법률, 대통령령, 행정규칙 등 개정 시 이에 따르며, 위 규정의 시행시기 및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이 책의 원문 파일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htdream.kr) 매뉴얼 - 사업관리 매뉴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며, 책의 내용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허락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 등의 행위를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2021년
혁신법을 반영한 알기쉬운

연구비 사용관리 매뉴얼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HIDI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